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402-01

# 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연구

2023. 3.



#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3월

- |           |                                 |
|-----------|---------------------------------|
| ■ 연구기관 :  | (사) 한국정책학회                      |
| ■ 책임연구원 : | 최진식 국민대학교 교수                    |
| ■ 공동연구원 : |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br>강영철 고려대학교 교수 |
| ■ 연구보조원 : | 가민석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



# 목 차

## I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 필요성 .....	3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	5
1. 연구목적 .....	5
2. 연구내용 .....	6
3. 연구 기대효과 .....	10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	10
1. 연구방법 .....	10
2. 연구범위 .....	11

## II 새 정부 농·식품 규제혁신

제1절 규제혁신에 관한 일반적 논의 .....	15
1. 정부규제의 개념적 특성 및 규제혁신의 필요성 .....	15
2. 규제혁신 전략의 개념적 특성 .....	17
제2절 규제혁신 전략수단 .....	18
1. 거시적 수단(규제개혁 과제 발굴) .....	18
1) 규제전반의 재구성 .....	19
2) 일반화된 규제심사 .....	21
3) 자동 재검토조항 .....	23
4) 사법적 심사 .....	24
2. 미시적 수단(개별규제 개혁수단) .....	24
1) 규제 폐지 .....	25
2) 규제내용 개혁수단 .....	27
3) 규제절차 개혁수단 .....	40

# 목 차

제3절 시사점 .....	55
1. 거시적 수단 .....	55
1) 총평 .....	55
2) 세부적 시사점 .....	55
2. 미시적 수단 .....	57
1) 총평 .....	57
2) 세부적 시사점 .....	60

## III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전략

제1절 농업 부분 규제개혁 서설 .....	65
1. 규제개혁의 의미 .....	65
2. 농업·농촌부문 규제개혁 방향 .....	67
1)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	67
2) 전략적 규제개혁 추진 .....	68
3. 축산·수의 분야 규제개혁의 특수성 .....	71
4. 농림·산림 분야 규제개혁심사 .....	73
제2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규제 .....	76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	76
2. 규제의 법률 위임 필요성 .....	77
제3절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전략 .....	78
제4절 스마트농업 규제개혁 전략 .....	136
1. 스마트농업의 개념과 목적 .....	136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분석 .....	142
1) 스마트농업육성법 목적과 내용 .....	142
2) 스마트농업육성법 분석 .....	144
3) 규제분석 결과 .....	152

## 목 차

제5절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제개혁 전략 .....	153
1. 반려동물 연관산업 개요 .....	153
1)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및 고려사항 .....	153
2) 펫휴머니제이션의 대두와 논의의 확대 .....	157
2.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제개혁 방안 .....	183
제6절 시사점 .....	187
1. 농식품 및 스마트농업 규제개혁 시사점 .....	187
2. 반려동물 산업 규제개혁 시사점 .....	189

### IV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규제혁신전략 개선방안 .....	193
1. 거시적 수단 개선방안 .....	193
2. 미시적 수단 개선방안 .....	194
제2절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방안 .....	197
제3절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제개혁방안 .....	198
<b>【참고문헌】</b> .....	201

## 표 목차

[표 I-1] 농업가치사슬 구분 .....	9
[표 II-1] 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 .....	52
[표 II-2] 새 정부 농·식품 규제개혁을 위한 미시적 수단 .....	57
[표 III-1] 2021년 농림·산림 분야 규제개혁 심사결과 .....	71
[표 III-2] 2021년 농림·산림 분야 규제개혁 심사결과 부처별 비교 .....	72
[표 III-3] 행정리 기준 대중교통 운행횟수 비교(2010년 vs. 2015년) .....	78
[표 III-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	80
[표 III-5] 내용연수표(차량 제외) .....	81
[표 III-6] 특성별 농업법인 현황 .....	88
[표 III-7] 농업법인 출자자 수 .....	89
[표 III-8] 농업법인 출자금 규모 .....	90
[표 III-9]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 .....	93
[표 III-10]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적용제외) .....	107
[표 III-11] 도매시장 종류별 개소 .....	122
[표 III-12]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	123
[표 III-13] 스마트농업 적용 분야 및 내용 .....	139
[표 III-14]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안 세부 내용 .....	143
[표 III-15]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업무 수행 현황 .....	148
[표 III-16] 반려동물 관련 주요 조사별 양육현황 .....	154
[표 III-17] 미국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유형 .....	166
[표 III-18] 반려동물보험 원수보험료 현황 .....	175
[표 III-19]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현황 .....	179
[표 III-20] 주요 국가·지역별 스마트농업의 특성 .....	189



## 그림 목차

[그림 I-1] 원자재 가격 추이(2021~2022년) .....	2
[그림 I-2] 국제곡물가격 추이(2018~2022년) .....	3
[그림 I-3] 기준금리 추이(2021~2022년) .....	3
[그림 I-4] 새 정부에서의 국정과제(농림축산식품부) .....	4
[그림 II-1] 새정부의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방향 .....	20
[그림 II-2] 과제 발굴 및 확정 흐름도 .....	22
[그림 II-3] 규제샌드박스 운영 체계도 .....	46
[그림 II-4]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절차 및 체계도 .....	48
[그림 III-1] 주요국 가구별 반려동물 양육률 .....	155
[그림 III-2] 22개국 반려동물 양육률 .....	156
[그림 III-3] 세계 반려동물 관련 산업 매출액(2021) .....	158
[그림 III-4] 한국 반려동물 관련 사업 규모 및 예측 .....	159
[그림 III-5] 반려동물 연간 카드 지출액 .....	162
[그림 III-6] 미국 반려동물 양육관련 지출 현황: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	163
[그림 III-7] 반려동물 사업 제품 국가별 교역 현황 .....	168
[그림 III-8] 국내 반려동물 사료사업 규모 .....	170
[그림 III-9] 국내동물용 의약품 시장현황 .....	178
[그림 III-10] 한국 동물용 의약품 관련 법령 연계 .....	180
[그림 III-11] 미국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조직현황 .....	182



I.

#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 I.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연구배경

#### □ 농업분야의 지속적 침체

- 최근 농림축산 분야의 개방화,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한국농업의 구조적 문제로 농업부문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침체하여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농축산물 수출도 점차 감소하여 왔음(관계부처 합동, 2018)
  - 2010년에 46.4%였던 ‘농가 중 65세 이상 경영주 비중’이 2015년에 53.4%로, 2019년에는 6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반면 2010년에 2.8%였던 ‘농가 중 40세 미만 경영주 비중’이 2015년에 1.3%로, 2019년에는 0.9%로 감소하였음(관계부처 합동, 2021)
  - 2008년 국내총생산(GDP) 중 3.8%였던 농림업 비중이 2016년에 2%대로 처음으로 감소한 후 2019년에는 2.7%까지 하락했음(팜인사이트, 2021)
  - 2004년에 총 농가소득 중 41.6%였던 순수농업소득이 2019년에는 24.9%로 급감하였음(농축유통신문, 2020)
  - 2000년에 3.8억 달러였던 신선 농산물의 일본 수출액이 2016년에 2.5억 달러로 감소하였음(관계부처 합동, 2018)

#### □ 새 정부 출범 후 농·식품분야의 대내외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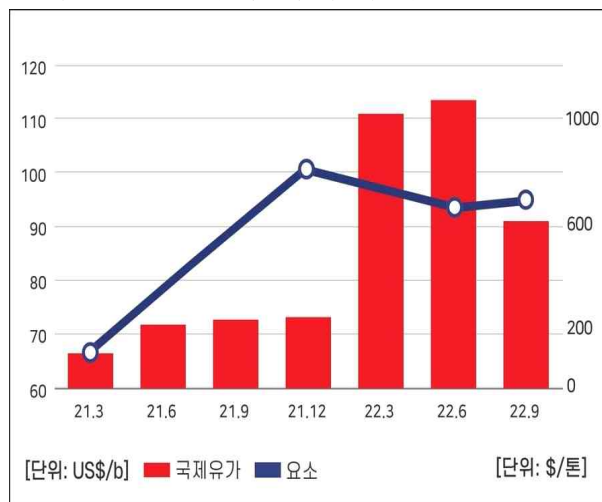
- 대내적 여건
  - 지속적인 농촌의 고령화 및 농가인구의 감소 등 농림축산 분야의 인적구조 변화로 인하여 농촌의 활력이 계속해서 저하되어 왔음
  - 이로 인하여 농업 경영규모는 영세화되고 기술수준은 더욱 낮아져 2017년에 21,444원이던 농업노동생산성(원/시간)이 2018년에 18,003원, 2019년에 16,912원, 2020년에 17,990원으로 급감하였음

- 농업의 낮은 생산성, 규모의 영세성 등 한국농업의 고질적 문제점에 최근의 환경 부담, 탄소중립 등의 새로운 문제가 더해져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이 더욱 위협받고 있음
-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최첨단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분야의 생산, 유통, 소비는 아직까지 오프라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소농 등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은 농촌경제의 침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대외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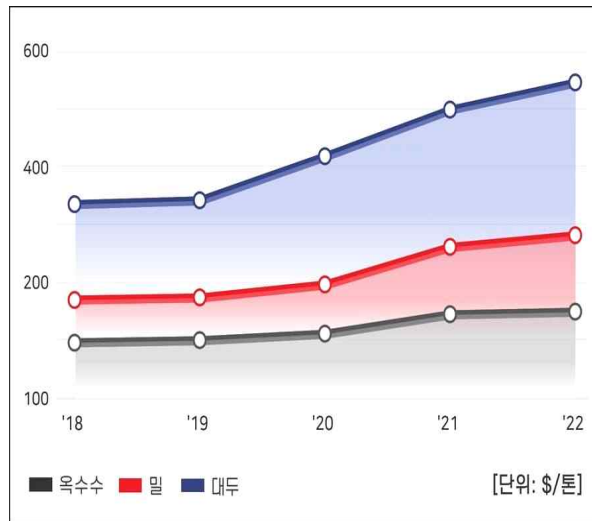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2020년부터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외부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하여 촉발된 식량 보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곡물생산이 일부 소수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자유주의적 세계농업구조에 큰 혼란을 야기하면서 식량생산을 위한 곡물 확보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 이는 곡물을 포함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하여 식량공급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면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다양한 외부적 여건으로 인하여 농림축산 생산품의 국제 공급망은 불안정하고 원자재, 곡물 및 금리는 인상하여 농·식품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임

[그림 I-1] 원자재 가격 추이(2021~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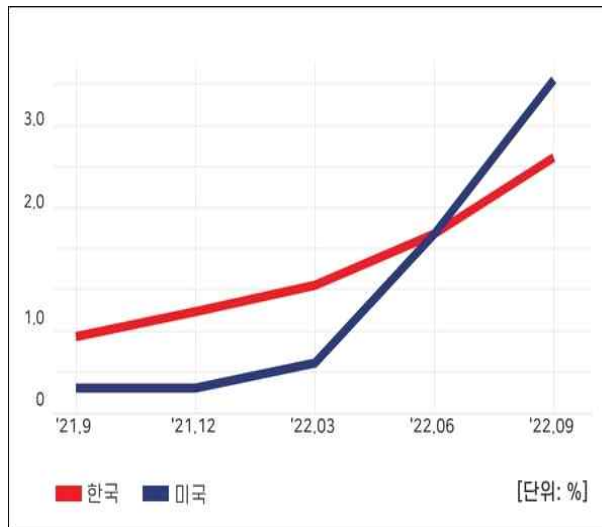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내부자료.

[그림 I-2] 국제곡물가격 추이(2018~2022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내부자료.

[그림 I-3] 기준금리 추이(2021~2022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내부자료.

## 2. 연구 필요성

### □ 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기회 창출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요정책, 조직, 규제, 업무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최근 직면한 대내외적 악조건에 대응하면서 한국 농업·농촌의 대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식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윤석열 정부 농정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농정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시장, 경쟁, 자율, 창의 등의 핵심 가치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함
- 특히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주권, 농가경영 안정 및 농·산촌 지원 등을 농업분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비정상 사례 및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매력적 농촌 공간조성 및 동물복지강화 등 4대 목표 달성을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함

- 농업혁신, 자율, 창의 등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등 핵심과제를 추진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연대·상생협력) 강화도 병행할 것을 강조함

[그림 I-4] 새 정부에서의 국정과제(농림축산식품부)

	[여건]	[정책목표]	[핵심과제]
<b>식량공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망 교란</li> <li>○만성적 쌀 과잉</li> <li>○곡물자급률 하락</li> </ul>	1.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1-① 식량자급률 제고 1-② 농업 생산성 향상
<b>농업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성장 산업구조</li> <li>○고령화, 인구감소</li> <li>○고용 창출력 부족</li> </ul>	2. 농업의미래성장 산업화	2-① 스마트농업 확산 2-② 미래 신산업 육성 2-③ 수출 및 ODA 확대
<b>농가경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비 급등</li> <li>○가격 급등락</li> <li>○기후위기 심화</li> </ul>	3.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3-① 농가 경영위기 극복 지원 3-② 유통 선진화 및 수급안정
<b>농촌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소멸</li> <li>○농촌 난개발</li> <li>○복지전달체계 악화</li> </ul>	4.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4-①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 4-②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4-③ 동물복지 강화
<b>기반</b>	농업혁신, 자율, 시장, 연대협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내부자료.



##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 1. 연구목적

#### □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전략 모색

-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6월 14일 발표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서 신기술 및 신산업 도입, 기업 활동 및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혁신에 국가역량을 총결집할 것임을 천명함
  - 이를 위하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의 규제샌드박스를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며, 기존의 포지티브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함(국무조정실, 2022)
-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2022. 6. 14, 국무총리 발표)
  - 규제혁신을 위해 공공·민간의 역량 결집
  - 규제개선 과정에 민간의 참여 확대
  - 부처 참여하에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2022년 6월 20일에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장관 주재)와 농식품부 규제개혁 T/F를 신설하였음
  - 농식품 규제개혁 T/F를 중심으로 분야별(9개) 세부 작업반을 구성하여 진입장벽 등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추진함
- 특히 농식품부 T/F를 통해 규제를 지속 혁파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국조실·기재부 규제혁신 체계를 활용하여 개선함
- 본 연구는 이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개혁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농·식품 분야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 모색을 주목적으로 함
  - 즉, 현행 정부규제 중 농축산식품 분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개혁하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새 정부 중 핵심과제 중 스마트농업, 반려동물 관련 산업, 푸드테크 등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전략을 중점으로 모색하고자 함

## 2. 연구내용

### □ 새 정부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전략 현황분석

- 본 연구의 본문 중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단행한 규제혁신 전략을 거시적 수단과 미시적 수단 측면에서 분석함
  - 거시적 수단은 기존 규제 중 혁신의 필요성이 있는 개선과제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와 관련된 ‘규제개선과제 발굴전략’을 의미함
  - 미시적 수단은 발굴된 개선과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관련된 ‘개별규제 개혁전략’을 의미함
- 분석대상은 새 정부 들어서 총 2회 개최된 규제개혁 전략회의에서 확정된 개선과제를 거시적, 미시적으로 규제개혁 전략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2022년 9월에 개최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및 2023년 2월에 개최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의 회의 자료를 기초로 함

### □ 농·식품 전반, 스마트농업, 반려동물 산업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본 연구의 본문 중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3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농·식품 전반, 스마트농업, 반려동물 산업 등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새 정부 출범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다양한 규제개혁 주요과제 중 농·식품 전반, 스마트농업, 반려동물 산업 등을 선별한 이유는 농업가치사슬에서 이 세 분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가치사슬(value chain)은 Porter(1985)에 의하여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 기업의 활동 및 기능이 단독으로 또는 상호 연계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쇄 과정을 의미함
  - 따라서 가치사슬 개념의 핵심은 부가가치이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들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가치사슬’ 이라고 명명하였음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들은 크게 주요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으로 나뉘 볼 수 있음
  - 주요활동
    - \* 생산, 운송, 마케팅, 판매, 물류, 서비스 등의 현장 업무
  - 지원활동
    - \* 생산기반시설 지원, R&D, 교육, 조직화, 전문화 등 주요활동 지원업무(지성태, 2018: 32-33)
- 농업가치사슬이란 농산물(임산물, 축산물 포함)을 ‘생산’ 하고, 이를 ‘유통·판매’ 하여 ‘소비’ 하는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활동과 기능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쇄과정을 의미함
  - 특히 농산물의 경우 다른 공산품에 비하여 부패하기 쉬운 속성이 있어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저장, 유통, 판매과정에서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많은 활동, 서비스, 자원, 정보 등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농업가치사슬을 생산, 유통, 소비의 3단계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보다 세분화된 단계로 나누는 견해도 있음
  - 이효정·김은주(2018)는 농업가치사슬을 다음의 6단계로 구분함
    - \* 투입재
    - \* 생산
    - \* 수확·저장·가공
    - \* 유통
    - \* 판매
    - \* 소비
  - 지성태(2018)는 농업가치사슬을 다음의 6단계로 구분함
    - \* 생산요소 투입
    - \* 생산

- \* 선별·저장·가공·포장
  - \* 유통
  - \* 판매(내수, 수출)
  - \* 소비
- 이효정·김은주(2018)와 지성태(2018)는 모두 6단계로 농업가치사슬을 나누고 있으나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 대하여 다소 차이가 있음
- \* 첫 번째 단계를 이효정·김은주(2018)는 ‘투입재’ 라고 하였지만 지성태(2018)는 ‘생산요소 투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 세 번째 단계에 대하여 두 연구에서 ‘저장·가공’ 을 포함시킨 것은 동일함. 다만 이효정·김은주(2018)는 ‘수확’ 을 추가하였지만 지성태(2018)는 ‘선별·포장’ 을 추가하였음
- 반면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9)은 농업가치사슬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을 농사사전단계, 농사진행단계, 유통·소비단계의 3단계로 압축하였음
- 농사사전단계
    - \* 농업가치사슬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좋은 품종의 종자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종자산업’ 을 의미함. 이효정·김은주(2018)는 종자산업뿐만 아니라 비료산업, 농약산업을 포함하여 ‘투입재’ 라고 명명함
  - 농사진행단계
    - \* 농산물을 생산, 재배, 관리, 수확, 선별하는 단계를 말함
  - 유통·소비단계
    - \* 농산물을 출하, 유통, 소비하는 단계를 의미함
-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농업가치사슬을 전통적 구분인 생산-유통-소비의 3단계로 구분하되 생산의 개념 속에 투입재(또는 생산요소 투입, 농사사전단계), 생산, 수확, 저장, 가공, 선별, 포장 등이 모두 포함된 단계로 보고자 함
- 생산단계
    - \* 투입재(또는 생산요소 투입, 농사사전단계), 생산, 수확, 저장, 가공, 선별, 포장 등 모두 포함
  - 유통단계
  - 소비단계

[표 I-1] 농업가치사슬 구분

본 연구의 농업가치사슬 단계	이효정·김은주(2018)	지성태(2018)	삼정KPMG 경제연구원(2019)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재</li> <li>• 생산</li> <li>• 수확·저장·가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요소 투입</li> <li>• 생산</li> <li>• 선별·저장·가공·포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사사전단계</li> <li>• 농사진행단계</li> </ul>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li> <li>• 판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li> <li>• 판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소비단계</li> </ul>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소비단계</li> </ul>

자료: 이효정·김은주(2018), 지성태(2018), 삼정KPMG 경제연구원(2019)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농림축산식품 분야 규제를 ‘농업가치사슬’의 측면에서 재해석해 보면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판매하여 소비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쇄과정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에 가해지는 정부규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가치사슬에 입각하여 농림축산식품 분야 규제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보고자 함
  - 생산규제
  - 유통규제
  - 소비규제
- 이러한 농업가치사슬에 따른 규제유형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스마트농업, 반려동물 산업, 농·식품 연관산업 등 세 분야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 스마트농업은 주로 ‘생산규제’ 및 ‘유통규제’와 관련됨
  - 반려동물 산업은 ‘생산규제’, ‘유통규제’ 및 ‘소비규제’와 관련됨
  - 농·식품 연관산업은 주로 ‘생산규제’ 및 ‘소비규제’와 관련됨

### 3. 연구 기대효과

#### □ 농림축산식품 분야 규제개혁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 농림축산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리고 발굴된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와 관련된 규제개혁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 □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실용적 길라잡이

- 농식품 분야 연관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별하고 혁신하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규제개혁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농업·농촌 분야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농림축산식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

##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 1. 연구방법

#### □ 자료 수집방법

-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주로 규제정보포털을 활용하여 수집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http://www.better.go.kr))의 “규제현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규제를 2022년 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속하는 행정규제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함
- 그 외에는 정부 발표 보도자료, 보고서 및 선행연구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함

- 2013년의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확산대책, 2018년의 스마트팜 확산방안, 2021년의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2022년 9월에 개최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및 2023년 2월에 개최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의 회의 자료 등의 정부발표 보도자료와 규제개혁백서를 비롯한 각종 정부 보고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함
- 각종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http://www.law.go.kr))를 참고함

## 2.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2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함
  - 특히 본 연구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http://www.better.go.kr))의 “규제현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규제를 2022년 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가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속하는 행정규제인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행정규제라 하더라도 2022년 말 전에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는 제외하기로 함
  - 또한 2022년 말 현재 제정 또는 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행정규제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함

### 분석대상 및 공간적 범위

- 규제의 주체가 국가인 행정규제만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자 함. 따라서 규제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단위임
  - 반면 규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조례에 의한 규제는 분석에서 제외하고자 함. 따라서 규제의 공간적 범위가 해당 지자체인 규제는 제외됨





## Ⅱ. 새 정부의 농·식품 규제혁신

제1절 규제혁신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2절 규제혁신 전략수단

제3절 시사점



## II. 새 정부 농·식품 규제혁신

### 제1절 규제혁신에 관한 일반적 논의

#### 1. 정부규제의 개념적 특성 및 규제혁신의 필요성

- 정부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바람직한 사회질서 또는 경제질서)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1호)
- 이러한 정부규제의 개념은 규제기관인 정부의 입장에서 접근하느냐, 또는 피 규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달라짐
  - 첫째, 정부규제를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적 정책수단임
  - 둘째, 피 규제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민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규칙이 강제적 의사규칙으로 전환되어 개인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점(게임의 규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즉, 정부규제는 사회 전체를 위하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권익침해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이에 규제혁신의 필요성도 공익적 측면과 피 규제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부담(권리제한과 의무부과)의 측면으로 나뉘 살펴 수 있음

#### □ 공익적 측면에서의 규제혁신 필요성

-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규제는 시장 행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 반면 불합리한 규제는 민간의 행동을 비효율적으로 유도하고 사회적 자원의 왜곡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는 규제를 설계할 때 해당 규제에 적용할 행위자들, 즉 행정가와 피 규제자가 이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규제의 역설

-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됨 (규제의 사문화, Over-regulation produces under-regulation)
-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기존의 위험에 소홀하게 되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을 증가시킴
-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는 혁신을 지연시켜 오히려 기술 개발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음
-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기업체에 자기 상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할수록 오히려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들게 됨

○ 규제의 재분배효과의 왜곡(사회적 비용의 증가)

- 규제는 기업들이 자원을 활용할 때 경제적으로 노력할 인센티브를 잃게 함
- 규제로 인한 경쟁의 감소는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적정수준보다 많은 수익을 얻게 하며, 이는 사회 내에서 다른 누군가(주로 소비자)의 손해로 나타남
- 서비스 부문이나 특정제품에 가해지는 규제는 제품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업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제품 비용을 감수하도록 함
- 규제 때문에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 특정 조항의 준수를 위한 순응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초과 이윤을 연구개발이나 혁신에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피 규제자 부담 측면에서의 규제혁신 필요성

○ 규제의 획일성과 경직성으로 인한 규제효과의 왜곡

- 규제의 획일성은 피 규제자나 정책이 처한 개개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규격화하고 동질화하려는 현상을 의미함

- 규제의 경직성은 한번 설계된 규제기준이 정책 상황이나 환경 변화로 불합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규제의 확일성과 경직성으로 인하여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은 실현될 수 있겠지만 피 규제자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폐단을 낳기도 함

○ 규제 피라미드로 인한 비용의 증가

- 대개의 경우 특정규제에 의하여 영향받는 피 규제자는 해당규제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갖기 마련임. 이러한 규제회피를 막기 위하여 또 다른 규제가 필요하게 되며,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규제 피라미드(regulation pyramid)를 초래하게 됨. 규제 피라미드는 계속해서 후속 규제를 양산하여 피 규제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증가시킴

## 2. 규제혁신 전략의 개념적 특성

○ 규제혁신 전략은 거시적 수단과 미시적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거시적 수단은 규제혁신의 구성요소 또는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전체 규제체계 또는 규제 전반의 품질을 개선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함
- 미시적 수단은 ‘개별규제의 개선 수단’을 의미하며 개별규제의 개선을 통해 피 규제집단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포함됨

○ 거시적 수단

- 거시적 수단은 신설규제 혁신전략, 기존규제 혁신전략, 규제절차 재설계 전략으로 나뉘 볼 수 있음
- 신설규제 혁신전략에는 규제영향분석, 공공협약, 규제대안(공동규제, 자율규제) 모색 등이 있음
- 기존규제 혁신전략은 ‘개선과제 발굴’을 의미하며, 이에 는 규제전반의 재구성, 일반화된 규제심사, 자동 재검토조향, 사법적 심사 등이 포함됨

- 규제절차 재설계에는 One-stop service, 행정문서 및 서식 전자화, 규제담당 부서 재조직, 전자보고시스템 등이 포함됨
- 본 연구는 농·식품 분야 기존규제 혁신방안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하에서는 ‘기존규제’ 혁신을 위한 거시적 수단(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국한하여 분석하고자 함

○ 미시적 수단

- 미시적 수단은 개별규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이에는 규제폐지, 규제내용 개선, 규제절차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포함됨

## 제2절 규제혁신 전략수단

### 1. 거시적 수단(규제개혁 과제 발굴)

- 본 연구는 기존 규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말하는 거시적 수단은 ‘기존 규제 중 개선과제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를 의미함
- 기존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거시적 전략(개선과제 발굴전략)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규제 전반의 재구성
  - 일반화된 규제심사
  - 자동 재검토조항
  - 사법적 심사
- 이하에서는 각 전략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새 정부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떠한 전략을 통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1) 규제전반의 재구성

### □ 개념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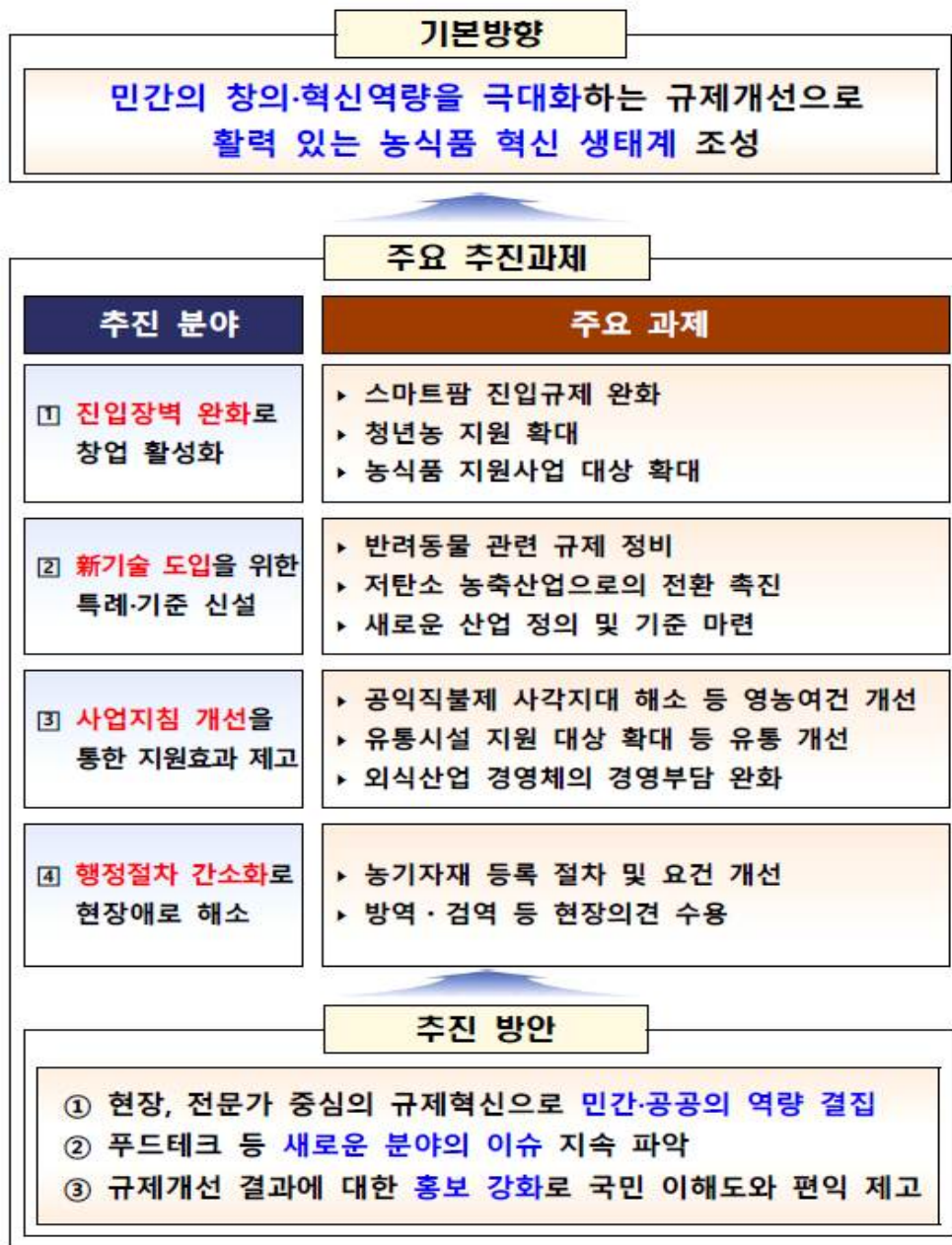
- 규제전반의 재구성(regulatory scrap and build)은 규제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제한된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특정 분야의 규제전반을 검토하는 포괄적인 규제개혁 수단을 의미함
- 해당 부처 소관 모든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개선과제를 선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개선이 시급한 업무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그 분야의 규제 중 개선할 과제를 집중적으로 선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집중과 선택’을 강조하는 전략임

### □ 농·식품 규제개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선할 규제과제를 발굴하는 방식은 주로 ‘규제전반의 재구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 규제개혁 T/F를 중심으로 분야별(4개) 세부 작업반을 구성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임
  - 즉,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선적으로 규제혁신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분야로 4개 분야를 식별한 후 각 분야별로 농식품 규제개혁 T/F의 세부 작업반을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음
- 농·식품 분야 규제 중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여 식별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
  -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애로 해소

- 각 분야별로 규제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개선할 규제과제를 식별한다는 점에서 ‘규제전반의 재구성’ 전략에 따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온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각 분야별로 농식품 규제개혁 T/F의 세부 작업반을 구성하였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임

[그림 II-1] 새정부의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방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내부자료



- 현장밀착형 규제발굴을 위해 분야별 이해관계자들(유관단체, 전문가 포함)이 참여한 소그룹 간담회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수십 차례 개최하였음
  - 이를 통하여 청년유입, 반려동물, 신산업 등 농·식품 전 영역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였음
  - 발굴 과제 중 중요성 및 체감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규제개혁 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함

## 2) 일반화된 규제심사

### □ 개념 및 특징

- 일반화된 규제심사(generalized reviews)는 규제기관 스스로 효율성과 필요성 등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소관 규제 전체를 재검토하는 정책으로 큰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효과도 크지 않은 편임
- 규제전반의 재구성과 달리 해당 부처에서 담당하는 모든 규제에 대해서 존폐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정치적 상징성은 상당히 높은 편임
- 그러나 실제 규제개혁 과정에서 규제기관 입장에서 폐지하기 부담스러운 규제를 심사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각종 예외를 설정하기도 하며, 심사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실패한 경우가 많음
- 규제 기요틴(guillotine)
  - 규제 기요틴(guillotine)은 ‘일반화된 규제심사’의 변형된 형태로서 1980년대 스웨덴에서 최초로 제도화되었음
  - 일정기간 내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들을 모두 폐지하는 강력한 규제개혁 수단으로 정치적인 상징성이 상당히 높은 편임
  - 그러나 기요틴 방식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관련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실제 효과는 미미한 대중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한 단점이 있음

□ 농·식품 규제개혁

- 새 정부 들어서 단행된 각 정부부처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절차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규제심판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규제개혁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규제심판제도’를 활용한 국조실·기재부 규제혁신 체계를 통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제심판제도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일반화된 규제심사’의 사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을 ‘부처 간 이견’으로 설정하고 규제심판에 회부된 모든 규제의 존폐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일반화된 규제심사’의 요소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제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2] 과제 발굴 및 확정 흐름도



\* 농식품 규제심판부는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활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내부자료

### 3) 자동 재검토조항

#### □ 개념 및 특징

- 자동 재검토조항(automatic review clauses)은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해당규제의 효율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전략으로서 ‘규제 일몰제(sunset clauses)’를 의미함
- 일정기간이 만료되면 규제가 자동 폐기되는 일몰제가 대표적이며 자동 폐기가 되지 않더라도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개선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소수의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호주 연방에서는 하위법령(subordinate legislation)에 대한 일몰제와 계획적 폐지 제도를 함께 적용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 10년, 7년, 5년 기한의 일몰기한을 적용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정부의 모든 문서작성 요구에 대해 3년의 일몰기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는 기술기준에 대해 5년의 일몰기한을 적용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5년의 일몰기한을 적용하고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 □ 농·식품 규제개혁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에서 원칙적으로 정부규제는 자동 재검토(일몰제)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일정 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 역시 자동 재검토(일몰제)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4) 사법적 심사

### □ 개념 및 특징

- 사법적 심사(judicial review)는 규제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통해 잘못된 규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을 의미함
-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에서,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 □ 농·식품 규제개혁

- 새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 분야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 미시적 수단(개별규제 개혁수단)

- 개별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미시적 수단은 다음의 세 가지 수단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규제폐지
  - 규제내용 개선
  - 규제절차 개선
- 규제폐지는 가장 강력한 미시적 수단임
- 규제내용 개선
  - 규제강도(수준)의 완화
  - 규제기준 완화
  - 규제대상 축소
- 규제절차 개선
  - 규제절차 준수를 위한 편의 제공

- 구비서류 감축
  - 의제처리
  - 유사절차 통합
  - 절차생략 및 단계축소
  - 규제샌드박스
- 이하에서는 각 전략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새 정부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떠한 미시적 수단을 통하여 개별규제를 혁신하여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새 정부 들어 농·식품 분야에서 단행된 규제개혁 개별사례는 2022년 9월 14일에 개최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와 2023년 2월 27일에 개최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된 것임

## 1) 규제 폐지

### □ 개념 및 특징

- 규제폐지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본질적 규제내용 개선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모든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고유의 목적 또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폐지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함
- 즉, 규제폐지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규제공백, 사회적 혼란, 국민안전 위협 등의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따라서 규제폐지는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없고 여타 미시적 수단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예외적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최종적인 미시적 수단임을 유념할 필요 있음

## □ 농·식품 규제개혁

-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원규모에 따른 차등지급(대규모인 경우 100~250억 원, 소규모인 경우 50~100억 원)과 총사업비의 10%인 수목식재 사업비 제한을 폐지(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AI 발생지역 가금 등에 대한 지자체의 반입제한 조치 개선(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고병원성 AI 발생지역産가금 및 가금 산물에 대해 非발생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 재해보험 현장 확인·심사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손해평가사에 대한 업무 위탁범위의 제한 해제
  - **(현황)** 손해사정사(손해평가 업무, 보험가입 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심사) 및 손해평가사(손해평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상이
  - **(개선방안)** 손해평가사가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손해평가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23.4분기)
  - **(기대효과)** 보험가입 농지 현장 확인·심사 투입인력을 확대하여 보험 운영의 안정성 및 정확성 제고

## 2) 규제내용 개혁수단

### 가. 규제강도(수준)의 완화

#### □ 개념 및 특징

○ 규제의 수준 또는 강도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함

- 사업등록의 인허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 농·식품 규제개혁

○ 비의도적 사유로 농약 검출 시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행정처분 완화(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등은 원료 농축산물을 인증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는 원료의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농약 검출 시에도 인증취소까지 가능. 즉 1차 및 2차 위반 시 시정조치, 3차 위반 시에는 인증 취소
- **(개선방안)** 비의도적인 이유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하여 시정조치만 가능하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3.2분기).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는 현행과 같이 1차에 인증취소 처분
- **(기대효과)**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등이 친환경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취급,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농가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인 경우에도 인증기관이 재량으로 재심사 절차 없이 인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음(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개선방안)**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재심사하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5조 개정( '23.2분기)
- **(기대효과)** 친환경 인증 농가의 구제 절차 강화 및 인증의 객관성 확보

○ 매립지(간척지) 등 매각대금 납부 시, 일시납부 외에 분할납부 허용(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매립지 등의 매각대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매각 대상 자격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 이외의 매각대금은 전액을 일시납부 하도록 규정
  - (개선방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23.2분기)하여 매립지 등 매각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기대효과) 매각대금 납부에 따른 매립지 매입자(지자체 등)의 재정부담 경감
- 농어촌관광휴양, 농업교육훈련 사업도 매립지(간척지) 등 임대 시 임대료 납부시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매립지 등의 임대료는 계약일 90일 내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작물 경작, 농수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한해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방안) 농어촌관광휴양, 농업교육훈련 사업 등의 임대료 납부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가능 대상에 추가(시행규칙 개정, ‘23.2분기)
  - (기대효과) 관련 사업 운영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 나. 규제기준 완화

### □ 개념 및 특징

- 규제가 요구하는 규제적용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함
  - 규제의 구비서류나 절차적 요건이 아닌 규제가 정한 각종 요건이나 기준의 완화를 의미함
  - 규제가 요구하는 시설기준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 농·식품 규제개혁

-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희망 시 거주지 자격요건을 “해당 시·군”에서 “해당 시·도”로 확대(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이를 통하여 입주 자격요건을 완화(확대)하여 청년농 등의 스마트팜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식품기업, 식품분야 산업체 재직자로 한정되어 있는 푸드테크 계약학과(대학원) 학생 선발 기준을 타 산업분야로 확대(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2023년부터 계약학과 학생정원(20명)의 일정(10% 내외) 범위 내에서 타 산업 분야 (특허·법무·회계 등) 기업 재직자도 선발이 가능하도록 개선
  - 푸드테크 기업 전문투자, 법률자문 분야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융합형 인재 육성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농업 기반 이전 활성화를 통하여 영농 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2년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였음
- 가축분뇨를 이용한 분뇨자원 중 질소 0.1% 기준 삭제(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골프장, 시설원예 등에 가축분뇨자원 이용 가능
- 「공익직불법」(제8조)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17~’ 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실적 요건 삭제(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사각지대 해소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17.4만 ha 추가하여 56.2만 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밤나무 면적 확인기준은 5천㎡, 잣나무 면적 확인기준은 1만㎡이었으나, 이를 모두 1천㎡ 이상으로 완화(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이를 통하여 밤나무·잣나무 임업인 4,570임가(+∞)를 임업직불제에 등록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완화(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그간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중 하나에서 최하위 배점을 획득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이를 개선하여 평가항목 중 하나에서 최하위 배점을 획득하였다더라도 다른 평가항목 점수가 우수할 경우 선정 가능
-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시 업체당 운영자금 대출규모(대출 상한액 5억 원)를 확대하고 최소 대출한도 조건(3천만 원) 삭제(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외식업체 자금난 애로 해소로 업체 참여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 기대
- 가루쌀 특성을 반영하여 재해보험의 판매종료시점 연장, 보험금 지급조건 완화 등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정(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가루쌀 재배 활성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내 기타품목에 가루쌀을 포함하고 있으나 품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보장내용으로 인해 가입 저조
  - (개선방안) 가루쌀 생육시기(이앙적기 등)에 맞춰 판매종료 시점을 연장하고, 수확 불능 및 경작불능 관련 보험금 지급조건을 완화하는 등 개선( '23.2분기)
  - (기대효과) 가루쌀 재배농가의 보험수요 충족 및 농업경영 리스크 감소
- 종자업 등록 시설·장비 기준 완화 등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자산업 활성화 도모(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종자 생산·판매 시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종자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존재
  - (개선방안) 「종자산업법 시행령」을 개정( '23.4분기)하여 작물 종류별로 종자의 육성·증식·가공 등에 꼭 필요한 시설·장비를 선정하고, 적정 기준 마련
  - (기대효과) 종자업체들의 편의성 제고 및 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
- 농업법인 설립·경영에 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설립 및 경영 참여 제한
    - \*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출자 한도는 출자액 90%까지 완화되었으나 설립주체는 농업인, 농업 생산자단체로 제한
    - \*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농산물 가공·유통 등 농업 외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농업인의 참여 제한

- (개선방안) 비농업인도 농업회사법인 설립주체 및 영농조합법인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3.4분기)
  -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이 설립에 참여하도록 개정
  - \*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조합원,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게 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농업법인 정관례(고시) 개정
- (기대효과) 농업법인 설립·경영에 비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농업계 외부의 자본력, 기술력 도입 촉진
- 무농약원료 허용범위를 완화하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유기가공식품 인증품은 일반원료를 5% 이내에서 허용하나,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은 일반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무농약원료 가공식품도 인증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일반원료를 5% 이내에서 허용하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3.2분기)
  - (기대효과)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
- 수출통합조직 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업체 출자제한 규정 완화(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수출통합조직은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공동 참여하나, 수출업체의 출자한도 및 의결권을 20%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의견 반영에 한계
  - (개선방안) 수출업체도 통합조직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출자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 제한 규정 완화( '23.1분기)
  - (기대효과) 수출업체의 추가 지분참여에 따른 의결권 확대로 수출통합조직의 의사결정구조 합리화 도모
- 수출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지원한도 등을 완화하여 수출지원의 범위 확대 및 수출업체 편의성 제고(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국내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도한 자격제한, 지원한도 및 복잡한 행정절차(수출입 실적, 세부항목별 지원한도, 사업공고 시기(1~4월), 재무제표 등 공통제출 서류 등 부담)로 수출업체 애로

- (개선방안) 수출업체의 역량,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격, 지원기준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 세부 추진계획 개선( '23.1분기)
  - (기대효과) 수출업체 현장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수요가 높은 식음료·물류시설 용지비율 확대로 잔여용지 활용도 제고(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물류업과 식음료제조업은 분양률이 높고,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있음. 분양현황(' 22.6월, 71.8%)을 살펴보면 물류 100%, 식음료 96%, 연관업종 48%, 음료 14%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개선방안) 연관업종 및 음료제조 용지를 축소하고 식음료·물류 시설 용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개정 고시 완료
  - (기대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잔여부지의 입주활성화(현 분양율 72.4%)가 기대됨. 이에 건식무역, 제이드 시스템 투자유치, (주)팔도, 서주제과 등 중견 기업들의 경우 투자의향이 있음을 보여 줌
- 고령·은퇴농의 과원 활용을 위해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자격을 임대차 과원까지 확대(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토지(과원) 소유 또는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농협·농업법인 등으로 지원자격 제한
  - (개선방안) 경영주가 임대를 희망하거나 방치된 과원을 임차하여 꽃가루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단지 조성 대상에 임대차 과원 포함
  - (기대효과) 사업 수요 확대, 신뢰할 수 있는 국산 꽃가루 공급에 기여
- 관광농원 개발을 희망하는 신규농업법인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조건부 자금지원 추진(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농업종합자금 지원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를 요구하여 관광농원 개발을 희망하는 신규농업법인은 해당 자금 활용이 곤란함. 신규사업자는 시설자금이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없는 신규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체 등록이 불가
  - (개선방안) 농업종합자금의 지원 목적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조건부 자금지원 추진( '23.1분기)
  - (기대효과)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신규사업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기회 부여

-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항목 신설(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지역주민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시 관련 시설개선, 장비구입 등에 대한 지원이 없어 서비스 제공 단절 및 서비스 질 저하 발생
  - (개선방안)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원자금 사용 용도에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항목 신설( '23.4분기)
  - (기대효과) 지역 서비스공동체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서비스 지속 지원 가능
-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소규모 캠핑업 (야영장업) 허용(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체험마을은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입지·편의 시설의 건축법상 용도 문제 등으로 야영장업 등록이 어려움
  - (개선방안) 체험휴양마을 체험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소규모 캠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도농교류법, 관광진흥법) 개선 협의(문체부, '23.4분기)
  - (기대효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체험휴양마을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관광 상품과 결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반려동물사료 수입 시 벌크 수입이 가능하도록 포장 상태 범위 확대(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에 따라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위험 국가(36개국)산 반려동물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 쇠고기 등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 포장' 상태로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왔음
  - (개선방안) 수출국이 검역증명서를 통해 반추동물유래 단백질 미포함 사항을 증명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벌크포장도 허용하도록 관련 고시(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 '23.4분기)

- (기대효과) 벌크포장 수입단가는 \$ 1~3/kg인 반면 소포장 수입단가는 \$ 8~14/kg라는 점에서 수입업체 비용 경감(약 80% 이상)이 예상됨

## 다. 규제대상 축소

### □ 개념 및 특징

- 규제로 인한 부담의 형평성과 규제 배제 시의 사회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규제대상의 유형, 규모 등 해당 규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배제해 주는 것을 말함

### □ 농·식품 규제개혁

-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 확대는 곧 허가제한 대상 축소를 의미하므로 규제대상 축소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특히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농지 사용기간을 최장 10년 내외로 허용함
  - 다만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시·도지사 및 농식품부 장관이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로 제한함
  - 스마트작물재배사 보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농업 진입 및 창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이 ① 농촌주민 중 노후주택을 개보수(대수선 이상) 또는 철거 후 신축하는 자, ② 농촌지역의 무주택자, ③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농촌주민의 정주 지원 강화를 위하여 읍·면 지역의 공동주택거주자가 읍·면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에 포함(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의 확대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이 될 수 없는 규제대상의 축소를 의미함
- 현행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3에 의하면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접객업의 경우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허용됨. 이러한 특례를 더욱 확대하여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용도변경으로도 식품접객업 허용(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생산관리지역 내 식품접객업 허용 대상범위 확대는 곧 허용제한 대상 축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동물 장묘업 중 화장·건조장·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설치 시 거리제한 규정 적용 배제(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동물장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장묘업 입지제한 지역 적용대상에서 동물장례식장 제외
- 현행 「전통주산업법」 제2조는 전통주를 ①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②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또는 ③지역특산주를 전통주로 정의하고 있음. 이 중 지역특산주(와인, 브랜드 등 포함)를 전통주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정의(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이는 지역특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비전문취업 비자(E-9)의 외국인 취업 허용 서비스업 세부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신설하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음식점업 외국인 취업허용 확대는 외국인 취업허용 제한대상의 축소를 의미함
-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 문화, 언어 소통 문제 등을 고려하여 주방보조 분야(홀 서비스는 제외)부터 추진
- 수입식물검역 훈증소독 중 가스농도 측정 시 방제기술자의 반면형 방독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여 방제업체의 편의 제고(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훈증제 투약 및 개방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가스농도 측정 시에는  
반면형 방독마스크 착용을 허용
  - 방제기술자의 가스농도 측정 시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안전사고 방지, 기기 조작  
및 수치 확인이 용이해져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등 도매유통 혁신을 위한 「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가칭)」 제정(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방식이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되어  
왔음. 이로 인하여 개설구역 이외에서나 제3자의 판매가 제한되어 경매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시장혼잡 등이 초래되어 왔으며, 결국 농산물의 품질저하  
및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폐단을 낳아 왔음
  - **(개선방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하여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과 사업  
범위의 전국단위 확대를 통한 도매유통 혁신을 추진함( '23.4분기). 이를  
위하여 농산물 온라인 도매 플랫폼 구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  
(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기대효과)** 도매거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거래물류 효율화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
-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매시장법인 경영사업 확대(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나, ‘선별·  
포장·가공·저장·수출입 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경영이 가능함.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농산물 수집기능 강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상품화 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 확대 요구
  - **(개선방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24.4분기)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농산물 출하자 지원(종자 개발, 농업인 교육, 포장재 지원 등)·  
구매자 지원(물류지원 서비스, 소상공인 소포장·상품화 지원 등)등 공익적  
활동에 대한 경영사업 유형화 및 확대
  - **(기대효과)**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소득 향상과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업집적법」상 ‘첨단투자지구’를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민간투자 확대에 기여(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대체초지 조성비 감면대상 확대는 감면제한대상 축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현황) 「산업집적법」상 ‘첨단투자지구’ 목적으로 초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가 감면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제약
  - (개선방안)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중요 산업시설 기준에 산업집적법상 ‘첨단투자지구’를 추가하는 「초지법 시행령」 개정(‘23.2분기)
  - (기대효과) 초지법상 부담금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곤충사육농가에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 「축산법」상 가축(기타동물)에 속하는 곤충은 다음의 14종에 한정되어 있어 곤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있음(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 사육 가능한 곤충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제한하는 규제의 대상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를 통하여 사료용 곤충기업 양성 및 농가소득 증대로 곤충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판매(부대시설 내 제품판매장)가 가능함. 따라서 OEM 생산 제품을 묶어(혼합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밖의 별도 사무실에서 판매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왔음(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산업단지 내 OEM 제조 조건(① 생산제품 입주업체 직접기획, ② 입주업체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제조사에 제공, ③ 입주업체 명의로 제조, ④ 입주업체 책임 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을 충족할 경우 OEM 생산제품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동일하다는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우선 허용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 ‘23.1분기)

- 별도 사무실 운영비, 물류비 등 추가 비용 절감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 내 커피(원두) 생산기업에서 구매자, 방문객들이 커피(음료) 섭취를 희망하더라도 시음 외에는 유료판매가 금지되어 왔음(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부대시설 범위에 ‘푸드카페’ 항목을 신설하여 비알콜 음료(커피 등) 판매 허용(‘23.1분기)
  - 클러스터 내 자체 생산품과 함께 다양한 음료 판매를 허용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 제공 및 다양한 식품 문화·관광·체험·홍보 등이 융합된 식품문화복합공간 창출로 산단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농업창업에 필요한 농지, 시설 등의 구입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 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음(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 근로를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허용(‘23.1분기)
  - 귀농인의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 도모
- 지역농협 복수조합원 대상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추가하여 실질적 영농 종사 고령 농업인의 조합원 자격 유지(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고시)」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가족원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아 조합원 가입 불가
  - **(개선방안)** 농촌 고령화를 감안하여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농업인은 ‘가족원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자’에 포함되도록 고시 개정(‘23.1분기)
  - **(기대효과)**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고령 농업인의 조합원 자격 유지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양파 육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8월 중순~11월 상순 동안 양파 정식을 위한 육묘를 실시하나, 농업인이 육묘 용도로 활용할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고추 수확 종료 후 양파 육묘 용도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의 사용범위 확대
  - (기대효과) 고추 및 양파 재배 농업인의 편의성 제고 및 생산비 절감

### 3) 규제절차 개혁수단

#### 가. 규제절차 준수를 위한 편의 제공

##### □ 개념 및 특징

- 규제기관이 피 규제자에게 규제절차 준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규제 관련 정보의 제공은 규제 준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됨
  - 이를 위하여 지자체마다 민원인의 규제 관련 사무처리를 돕기 위해 민원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생활민원 바로처리 시스템, 민원후견인 제도 등을 운영하여 왔음
  - 또한 공식저널, 소식지, 정보 웹사이트, TV, 콜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피 규제자들의 규제 준수의를 제고한 것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음

##### □ 농·식품 규제개혁

- 신규 외식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도 허용(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식약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신규 영업자 교육방식 개선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 신규 외식 창업준비자의 교육 접근성 강화로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구비서류 감축

##### □ 개념 및 특징

- 피 규제자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규제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를 줄이거나 양식 표준화 등을 통해 구비서류의 수량을 감축시켜 주는 것을 의미함

## □ 농·식품 규제개혁

- 수입목재류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시 제출해야 하는 기상청 온도예보서를 특정기간(12~2월, 7~8월)에 한해 제출 면제(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온도(5℃ 미만/5℃~15℃/15℃ 이상)에 따라 처리약량이 상이함
  - 약 2,000건('21년 해당 기간 기준)의 목재류 소독 관련 자료제출이 면제되는 효과로 방제업체의 업무 효율성 제고
- 농작물·가축재해보험의 가입절차가 복잡하여 가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가입농가 증가에 따른 관련 업무 과중으로 불완전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왔음(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정책보험사업자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 시 농업인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줄이고, 계약인수 시 목적물(농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검증모델 활용 검증으로 대체(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동 추진, '23.4분기)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관련 업무 효율화가 기대됨
- 식품외식종합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가 많아 식품기업의 문서작성 부담이 높고, 타 사업 지원 시에도 중복제출서류 존재(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개선방안)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제출서류 간소화('23.4분기)
  - (기대효과) 식품기업의 편의성 제고 및 행정업무 효율화
- 도시농업관리사(국가자격증) 신규 발급 시 관련 서류(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 사진)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왔음(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개선방안)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규칙 개정, '23.4분기)
  - (기대효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청 간소화로 국민편의 증진

## 다. 의제처리

### □ 개념 및 특징

- 의제처리는 주로 인허가 의제제도를 말하며,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주된 인허가 외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임
- 태양광 사업 등 전기사업 허가만 받으면 개발행위의 허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등 21개의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임(「전기사업법」 제7조의 3)

### □ 농·식품 규제개혁

- 농약 품목 변경등록 시 작물분류별 대표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도록 시험성적서 요건 완화(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현행 법령에 의하면 부자재 종류나 투입비율 변경등록 시 해당 농약에 등록된 모든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약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이를 개정하여 농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분류별 대표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만 제출
- 예를 들어 루페뉴론 유제 변경등록 시, 기존에는 감귤, 금귤, 레몬, 오렌지에 대하여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개선 후에는 감귤(대표작물)의 시험성적서만 제출

## 라. 유사절차 통합

### □ 개념 및 특징

- 유사절차 통합은 규제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규제가 요구하는 행정 절차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경우 이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함
  - 지역난방사업자의 난방설비 등 열 공급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계속사용검사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의 통합이 대표적인 사례임

### □ 농·식품 규제개혁

- 수입가공식품은 표시내용이 국내 가공품과 유사함에도 표시방식이 달라 비의도적 위반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가공식품과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통일(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글자크기 규정을 국내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개선(10포인트 이상, 굵게 및 장평·자간 기준 적용)

## 마. 절차생략 및 단계축소

### □ 개념 및 특징

- 규제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 불필요한 경우절차를 생략하거나 처리 단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함
- 주로 특정 지역, 규모, 유형 별로 특정한 규제절차를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음

## □ 농·식품 규제개혁

- 그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인증마크, 인증번호 및 인증기간을 표시하여야 하였으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마크 사용 활성화 및 인증경영체의 불필요한 포장재 변경 및 제작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기간 표시 의무를 삭제(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수출 농약 등록 절차 신설 및 제출서류 감축(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신설된 수출농약 등록절차는 국내 판매 농약 등록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이화학적 성질·상태 관련 자료, 약효약해·독성·잔류성,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제출)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등록 후 10년 경과한 농약 등은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이화학적 성질·상태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규제 완화
- 농약 직권검사결과 불합격 농약 모집단의 출하상황 보고의무를 삭제하여 직권검사 사후조치 절차 완화(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불합격 모집단의 출하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각 지자체에 소관 판매업자로 하여금 불합격 모집단 봉인 조치
- 등록 농약이 없거나 부족한 소면적 재배작물(엽채류·허브류 등)에 사용하는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 확대(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소면적 재배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통해 농업현장의 농약 사용 애로사항 해결 및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
- 바이오의약품 원재료(재조합단백질) 수입 시 검역절차 생략(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재조합단백질은 변질 우려가 높아 신속한 검역·통관이 필요하므로,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검역장소 입고 전 검역 제외 판정이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 검역 소요시간 단축 및 신속 통관(최대 3일 → 즉시 통과)으로 창고비용 등 직간접 비용(연 10억 원 = '21년 검역 검수건(507건) × 평균 보세창고 보관일수(2일) × 평균 100만 원/일) 절감 및 고품질 원재료를 신속하게 공급하여 바이오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
- 농작물·가축재해보험의 가입절차가 복잡하여 가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가입농가 증가에 따른 관련 업무 과중으로 불완전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왔음(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정책보험사업자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 시 농업인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줄이고, 계약인수 시 목적물(농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검증모델 활용 검증으로 대체(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동 추진, '23.4분기)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관련 업무 효율화가 기대됨
- 축산관련종사자의 교육방식을 개선하여 축산농가 불편 해소(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3. 2. 27)
  - (현황) 기존 축산업 허가자가 새로 확보한 축사에 축산업 허가를 받을 경우에도 축산업 신규허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여 불편 초래
  - (개선방안) 이미 축산업 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축산업 신규허가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신규허가 교육을 면제(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23.4분기)
  - (기대효과) 축산농가에 불필요한 추가교육 이수 의무를 면제하여 불편 해소

## 바. 규제샌드박스

### □ 개념 및 특징

-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임

- 즉, 규제샌드박스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서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 개국에서 운영 중임
  -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월에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음
- 규제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한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실증특례’를 중심으로만 운영하여 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증특례 외에도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을 통하여 추가하여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발전시켜 왔음

[그림 II-3] 규제샌드박스 운영 체계도



자료: 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sandbox/info/sandbox\\_intro.jsp](https://www.better.go.kr/sandbox/info/sandbox_intro.jsp))

- 규제샌드박스를 구성하는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실증특례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함.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게 됨
  - 임시허가는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함
  - 신속확인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제도임.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다만,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의 생명·안전 우려, 환경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두고 있음
  -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음
  -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음
  -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였음
- 규제샌드박스 절차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됨
  - 신청·접수
  - 규제부처 협의
  - 특례심의
- 규제샌드박스 신청
  - 사업자는 컨설팅을 거친 후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특례를 신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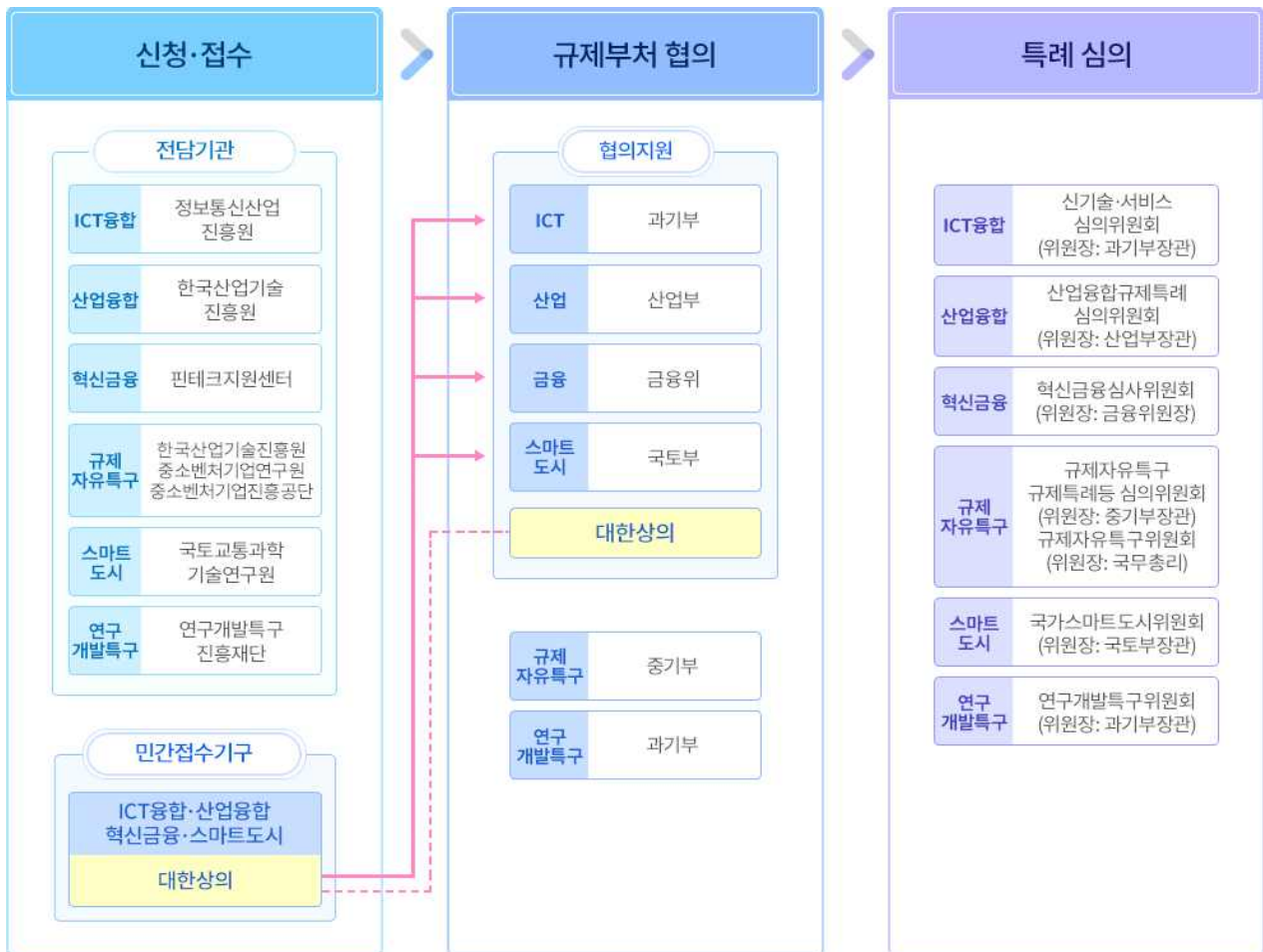
○ 규제부처 협의

-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는 신청과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각 부처 특례 심의위원회에 상정(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여 협의하여야 함

○ 특례 심의

- 전문 분과위에서 관계부처와의 쟁점 협의·조정 후,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함
-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과 함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도 함께 심의하여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함

[그림 II-4] 규제샌드박스 특례심의절차 및 체계도



자료: 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sandbox/info/sandbox\\_intro.jsp](https://www.better.go.kr/sandbox/info/sandbox_intro.jsp))

## □ 스마트농업의 규제샌드박스 필요성

- 최근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농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어 줄 성장 동력으로서 ‘스마트농업’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음.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의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을 혁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기존의 농업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은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유입을 촉진하여 침체된 농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은 각종 농작물 및 가축이 생육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좁은 농지, 감소된 농업인력 등 한국농업이 최근에 직면한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스마트농업이 활성화되면 스마트팜 경영인, 운영시스템 개발자, IoT 서비스 전문인력, 컨설턴트 등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어 젊은 세대들이 농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임(관계부처 합동, 2018)
- 미국, 일본 등의 해외선진국들은 이미 스마트농업을 자국 농업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방대한 영농규모에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하여 노지 분야의 정밀농업 또는 처방농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파밍(data farming)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여 왔음. 최근에는 로봇공학 이니셔티브 농업 R&D 및 농업부·국립기상서비스 오픈데이터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1)
  - 일본의 경우, 스마트농업을 ‘일본재흥전략 2016’ 중 하나로 선정하여 최첨단 식물공장을 개발하여 좁은 농지면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스마트농업 관련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WAGRI)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최근에는 무인트랙터, 생육진단, 자동 물관리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현장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1)

- 최근 정밀농업, 스마트온실, 가축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그간 침체된 농업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2020년 138억 달러였던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이 연평균 9.8%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22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부터 정부에서는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 왔음. 2013년의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확산대책, 2018년의 스마트팜 확산방안, 2021년의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등을 비롯하여 그간 정부에서 수립하여 시행하였음
  - 2013년에 발표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 확산대책’은 FTA 체결로 인한 개방화에 직면하여 ICT 융·복합 확산을 통하여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되었음
  - 이를 위하여 ICT 융·복합 성과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고, ICT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진전략을 도출하였음. 또한 관련 법·제도, 교육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였음(국회예산정책처, 2022: 15-16)
  - 2018년에 수립된 ‘스마트팜 확산방안’은 스마트팜을 통하여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첫 번째 추진전략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 및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도입하여 스마트팜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임. 두 번째 추진전략은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팜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세 번째 추진전략은 확산거점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벨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관계부처 합동, 2018)
  - 2021년에 수립되어 추진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은 그간 스마트팜 중심의 지원정책을 스마트농업으로 확대하여 농업의 스마트화를 농업의 전 분야에 확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확대 등 데이터 개방, 공유, 활용을 지원함. 둘째, 혁신벨리를 스마트농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업과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함. 셋째, 기술협력, ODA 등을 통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관계부처 합동, 2021)

-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농정과제(71번)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 디지털 혁신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새 정부 국정과제(71번 농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여 왔음
  - 특히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명 가속화에 따라 농축산식품 분야도 ‘스마트농업’을 통한 디지털 기술융합으로 혁신의 기회를 맞아 새로운 도약의 길이 열렸다고 판단됨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에서 스마트농업의 성과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한국의 스마트농업 수준을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업용 로봇, 인공지능 등은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불과하여 상용화 여부는 불분명하며, 농업용 빅데이터의 경우 표준화 문제로 고품질의 데이터 생성이 요원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EU국가의 스마트농업 수준의 70% 정도에 불과하며 약 4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고 함
  - 인력 수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1년 현재 총 33,400명(초급 4,300명, 중급 2,000명, 고급 27,100명) 정도의 스마트농업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약 13,000명 정도의 인력만 확보하여 약 20,000명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스마트농업 관련 전·후방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서 기술과 자금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 2021년 현재 스마트팜 기업의 70.4%가 자본금 5억 미만의 기업이며, 73%가 10인 미만 기업임(관계부처 합동, 2021)
-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농업분야의 신산업인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식별하여 혁파할 필요가 있음
  - 그간 농림부에서는 규제혁신 플랫폼, 신산업, 기업부담, 국민 불편·부담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하여 왔음
  - 특히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할 필요 있음

□ 농·식품 규제개혁

-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단독 건물 등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을 등록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차량 내 화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함(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2022. 9. 14)
- 이 외에도 22년 12월 현재 14개 과제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실증 특례 중임

[표 II-1] 농·식품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

(2022년 12월 기준)

업체명	주요 내용	승인시기	소관부서
① 나투스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li> <li>▶ (사업내용) 렌터카를 활용하는 ‘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펫택시 공급 유연성 확대 및 소비자 이용 편의성 개선</li> <li>▶ (기대효과) 소비자 이용 편의성 개선과 알리 확대 및 신규 시장 창출</li> </ul>	‘20.6월	동물복지 정책과
② 다자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농어촌지역 빈집활용 관광숙박업 육성</li> <li>▶ (사업내용) 농어촌지역 빈집을 장기 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에게 숙박서비스 제공</li> <li>▶ (기대효과) 농어촌의 일자리 확대 및 신규시장 창출, 숙박업 플랫폼 다양화</li> </ul>	‘20.9월	농촌 산업과
③ 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li> <li>▶ (사업내용) 반려동물의 특성(종, 성별, 몸무게 등)에 따른 맞춤형 사료(펫푸드)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li> <li>▶ (기대효과)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건강한 펫푸드 이용 및 관련 신산업 창출</li> </ul>	‘21.5월	동물복지 정책과
④ 블룩펫 ⑤ 페이지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li> <li>▶ (사업내용)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영상을 촬영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을 인식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반려견 정보 취합·관리 시스템)에 등록</li> <li>▶ (기대효과) 동물등록과정을 간소화하여 등록율 제고, 동물등록비용 감소, 동물 구조·보호 비용 절감</li> </ul>	④‘21.5월 ⑤‘21.12월	동물복지 정책과



업체명	주요 내용	승인시기	소관부서
⑥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 ㈜에스티 등 4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적재정량 검증기준 완화</li> <li>▶ (사업내용) ①농업용 동력운반차 2인승 허용 및 최소 적재정량 제한 완화(200kg→100kg), ②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연속운전 시험기준 완화(3시간 이상, 25Km→2시간 이상, 17Km)</li> <li>* 데이터 보강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의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농업용 동력운반차 실증특례 연장 ('21.8.9.~'23.8.8.)</li> <li>▶ (기대효과) 농업기계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기여</li> </ul>	'19.8월, '21.8월 (연장)	농기자재 정책팀
⑦ ㈜대륜 엔지니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농업용 전동 고소작업차</li> <li>▶ (사업내용)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만든 배터리팩을 장착한 농업 전동 고소작업차 운영으로, 동력원으로써 배터리팩의 성능 안전성 검증</li> <li>▶ (기대효과) 농업기계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기여</li> </ul>	'21.11월	농기자재 정책팀
⑧ 펫콤 ⑨ 켄틀펫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li> <li>▶ (사업내용)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염습, 추모 등) 진행 후, 정해진 지역(펫콤: 안산/젠틀펫: 문경)에서 차량 내 화장로를 통해 유해를 소각하는 서비스</li> <li>▶ (기대효과)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li> </ul>	'22.4월	동물복지 정책과
⑩ 아이싸이랩 ⑪ 펫스니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비문(Nose Print)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li> <li>▶ (사업내용) 모바일 앱(아이싸이랩) 또는 비문인식장비(펫스니즈)를 통해 반려동물의 비문을 촬영하고, 비문 패턴의 특징적 요소가 반영된 비문D를 생성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li> <li>▶ (기대효과) ①동물등록 과정 간소화를 통한 등록률 제고, ②이용자의 동물등록비용 감소, ③동물 구조·보호 비용 절감, ④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반려동물 산업 동반 성장 등</li> </ul>	⑩'22.9월 ⑪'22.11월	동물복지 정책과
⑫ 카카오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렌터카 기반 반려동물 운송서비스</li> <li>▶ (사업내용) 플랫폼을 통해 드라이버와 렌터카를 매칭 하여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제공</li> <li>* 기존 승인업체인 '나투스핀'을 영업양수('21.1.)하여 재신청</li> <li>▶ (기대효과) 소비자 이용 편의성 개선과 일자리 확대 및 신규 시장 창출</li> </ul>	업체 보완중	동물복지 정책과

업체명	주요 내용	승인시기	소관부서
⑬ 에이아이포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AI 기반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서비스</li> <li>▶ (사업내용) 앱을 활용하여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의 사진·영상을 분석해 눈, 피부 관련 질환의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수의사로부터 비대면으로 진료·처방을 받는 서비스</li> <li>▶ (기대효과) 비대면 진료(상담)를 통한 편의성 검증 및 병 조기발견 및 예방효과로 동물병원 치료비 절감 효과</li> </ul>	업체보완중	방역정책과
⑭ 펫스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반려동물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li> <li>▶ (사업내용) 고객이 소변검사키트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체외진단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수의사의 소견을 받아 내원을 유도하는 서비스</li> <li>▶ (기대효과)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지원, 반려동물 건강 관련 검사 수검률을 높여 감염병 확산 예방</li> </ul>	업체보완중	방역정책과

## 제3절 시사점

### 1. 거시적 수단

#### 1) 총평

##### □ 규제전반의 재구성전략을 통한 체계적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새 정부 들어서 단행된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규제전반의 재구성’을 통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왔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농·식품 규제 중 특정규제를 개정하게 되면 타 부처와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규제심판제도를 통하여 해당규제의 존폐(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음. 이는 ‘규제전반의 재구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일반화된 규제심사’의 일부 요소를 가미하여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서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거시적 수단을 다각도로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음

#### 2) 세부적 시사점

##### □ 잘된 점

- 농·식품분야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주된 전략인 ‘규제전반의 재구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량을 4개의 추진분야에 ‘선택과 집중’하여 효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였음
-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애로 해소 등 4개의 규제개혁 추진분야를 선택하여 농·식품 규제개혁 T/F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점이 상당히 돋보임

- 또한 ‘일반화된 규제심사’의 일부요소를 차용하여 타 부처와의 갈등소지가 예상되는 규제개혁 과제는 규제심판에 회부되어 타 부처와의 이견조율과 합의도출을 통하여 개혁 작업이 표류되지 않도록 하는 상생협력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도 인상적임
  - 특히 농·식품분야 규제는 농림부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수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 어느 부처보다 규제심판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미흡한 점

-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과제를 ‘규제전반의 재구성’ 전략을 통하여 발굴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하향식(top-down)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 즉, 규제개혁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4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개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모든 과정에서 규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피 규제자의 의견이 충실히 수렴 또는 반영되지도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2021년 6월부터 대면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하여 분야별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40여 회 개최하였으나 이를 농·식품 규제의 피 규제자로부터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한 절차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농·식품 분야에서 규제심판 외에는 ‘일반화된 규제심사’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활용하려고 계획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다소 아쉬움으로 남음
  - 농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현시점에서 ‘일반화된 규제심사’ 또는 이를 변형한 ‘기요틴’을 도입하여 규제개혁과제 발굴의 또 하나의 루트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판단됨

## 2. 미시적 수단

### 1) 총평

#### □ 규제내용 개선을 중심으로 한 농·식품 규제개혁

- 새 정부 들어 농·식품 분야에서 단행된 규제개혁 개별사례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2022. 9. 14)와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2023. 2. 27)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한 결과 미시적 수단의 세 유형 중 ‘규제내용 개선’ 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II-2] 참조)
  - 규제폐지는 3건, 규제 절차개선은 15건인 반면, 규제내용개선을 활용한 규제개혁은 무려 40건이나 수행되었음
  - 즉, 규제내용개선 건수가 규제폐지 건수의 약 13배, 규제절차 개선의 약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2] 새 정부 농·식품 규제개혁을 위한 미시적 수단

구분	미시적 수단	건수(개)	건수(개)
규제폐지	• 규제폐지	3	3
규제내용 개선	• 규제 외 대안 적용	0	40
	• 규제강도(수준)의 완화	4	
	• 규제기준 완화	20	
	• 규제대상 축소	16	
규제절차 개선	• 규제절차 준수를 위한 편의 제공	1	15
	• 단위사무의 처리 및 심사기간 단축	0	
	• 구비서류 감축	4	
	• 의제처리	1	
	•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동의	0	
	• 사후 확인	0	
	• 동시 절차진행	0	
	• 유사절차 통합	1	
	• 절차생략 및 단계축소	7	
	• 규제샌드박스	1	

자료: 저자작성

- 최근의 농·식품 규제개혁을 위한 미시적 전략의 다수를 차지한 규제내용 개선의 세부적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기준 완화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규제대상 축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규제강도(수준) 완화는 4건 있었던 반면, 규제기준 완화는 20건, 규제대상 축소는 16건 있었음
  - 규제기준 완화는 규제강도(수준) 완화의 5배, 규제대상 축소는 규제강도(수준) 완화의 4배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정에서 규제내용 개선을 위하여 규제 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외 대안(alternatives to regulation) 적용은 전통적 형태의 명령·지시적 규제를 규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대안적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함
  - 경제적 유인 설계, 정보제공 및 교육, 넛지(nudge) 등이 가장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음

#### □ 규제절차 개선수단의 다양화 필요

- 농·식품 규제개혁을 위한 미시적 전략으로서 최근에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규제절차 개선의 세부적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차생략 및 단계축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구비서류 감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규제절차 준수를 위한 편의 제공, 의제처리, 유사절차 통합,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각각 1건씩의 규제개혁 과제가 있었음
  - 반면, 절차생략 및 단계축소는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구비서류 감축이 4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향후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정에서 규제절차 개선을 위하여 단위사무의 처리 및 심사기간 단축,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동의, 사후 확인, 동시 절차진행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단위사무의 처리 및 심사기간 단축은 해당 단위 사무별로 규제가 정해 놓은 기준과 절차적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 규제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 및 신청서에 대한 규제업무 담당기관의 심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미함
  - 등록업무 처리기간의 단축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동의(silence is consent principle)는 규제기관과의 협의, 승인 등 규제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 규제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규제기관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해당업무에 대해 자동적으로 협의 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하면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만약 10일 내에 회신이 없으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임
- 사후 확인(ex post notification)은 사전 협의나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피 규제자의 신청이나 요구가 있으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규제 관련 민원을 수리하고 사후적으로 협의, 확인 및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임
- 동시 절차진행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여 여러 규제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의미함
  - 출입검사와 소방검사의 동시진행이 대표적인 사례임
-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새 정부 들어 단행된 농·식품 분야 규제 개혁은 주로 규제내용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규제 기준 완화와 규제대상 축소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는 대개의 경우 새 정부 초기 1년차에 단행된 규제개혁은 주로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식별하여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기 마련이므로 규제의 내용적 측면 중심으로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
  - 규제의 내용개선 중에서도 규제기준 완화, 규제대상 축소가 거의 전부였던 점도 이러한 규제개혁의 시기적 특징을 감안하여 불 필요가 있음

## 2) 세부적 시사점

### □ 잘된 점

- 농·식품분야에 해당하는 개별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미시적 수단으로서 규제 폐지, 규제내용개선, 규제절차개선 등의 세 유형의 전략을 모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농림부의 규제개혁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음
  - 규제폐지, 규제내용개선, 규제절차개선 등 세 유형의 전략 활용빈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유형의 전략을 활용하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 또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 규제내용 개선에 있어서도 규제 외 대안적용을 제외하고는 규제강도(수준)의 완화, 규제기준 완화, 규제대상 축소가 모두 활용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있음
- 규제절차개선에 있어서도 단위사무의 처리 및 심사기간 단축,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동의, 사후 확인, 동시 절차진행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한 건 이상의 개선 과제에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됨

### □ 미흡한 점

- 농·식품 분야 개별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미시적 수단으로서 규제폐지와 규제절차개선에 비해 규제내용개선이 훨씬 더 자주 활용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음
  - 규제폐지는 파급효과 측면에서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미시적 개혁수단 논의에서 차치하더라도, 규제내용 개선(40건)이 규제절차개선(15건)보다 약 2.7배 정도 많았다는 점은 향후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작업에서 개선하여야 할 점이라고 판단됨
- 규제 외의 대안적용에 비해서 규제강도(수준)의 완화, 규제기준 완화, 규제대상 축소가 최근에 더 자주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규제내용 개선을 위한 미시적 전략에 있어서 다소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통적 명령·통제 위주의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자율규제(self-regulation), 공동규제(co-regulation),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 교육 및 훈련, 홍보 및 의사소통, 넛지(nudge) 등의 보다 부드러운 개입전략을 활용하여 해당 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려는 방안을 다각도로 개발할 필요 있음
- 또한 규제절차개선에 있어서도 주로 규제절차 준수를 위한 편의 제공, 의제 처리, 유사절차 통합, 규제샌드박스, 절차생략 및 단계축소, 구비서류 감축이 단위사무의 처리 및 심사기간 단축,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동의, 사후 확인, 동시 절차진행에 비해서 더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향후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정에서 규제내용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미시적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것을 제언함



### Ⅲ.

##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전략

제1절 농업 부분 규제개혁 서설

제2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규제

제3절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전략

제4절 스마트농업 규제개혁 전략

제5절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제개혁 전략

제6절 시사점



### III.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전략

#### 제1절 농업 부분 규제개혁 서설

##### 1. 규제개혁의 의미<sup>1)</sup>

- 규제는 국가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로 국민과 기업 활동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규제는 국가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개인과 기업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조세 등의 국가수입에 기초하여 보조금, 재정지원, 공공재 공급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재정사업과 더불어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일컬어지기도 함(한국경제연구원, 2014:35)
- 「행정규제기본법」에는 행정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 하고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행정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는 주체 면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서는 안됨
- 규제는 행정부 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기타 권력기관 모두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일체의 행위 내지 조치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함
- 국가 권력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사실상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사적 기관도 포함하여 단순히 행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부, 사법부도 포함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이나 기타 사적 기구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성환, 2016)

1) 전학선(2016). “의원입법과 규제개혁”. 「헌법학연구」 22(3):81-83을 참고 및 요약함

- 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입법을 통하여 법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적 조치로 나타날 수도 있음
- 국가는 정책을 실현 시 국민과 많은 기업을 상대로 국가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규제는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음
- 모든 국가작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든가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모두 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규제는 사회를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규제를 통하여 사회적 통합과 조정을 하기도 함
- 규제는 그 비용이 쉽게 포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규제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규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이지만 문제점이 해결된 뒤에도 계속해서 남는 경우가 많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행해지는 규제가 문제점이 해결된 뒤에도 계속해서 적용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되어 버리는 것임
  - 둘째, 규제가 입법과정 등 투명한 절차와 논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고시 등을 통하여 시행됨으로 인하여 정당성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
  - 셋째, 국민들이 규제의 비용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압력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음(김동연, 2014:54)
- 규제개혁은 규제완화, 탈규제, 규제철폐 등 비슷한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나 규제완화와 규제철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제의 품질 개선과 비규제적 수단에 의한 규제수단의 대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함 (한상우, 2012:60)
- 즉 규제개혁을 규제완화로 이해하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규제를 수정하고 너무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며, 필요한 규제는 신설 내지 강화하는 것도 모두 규제개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규제개혁의 목표와 지향점이 모든 규제를 철폐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는 것이며 (홍완식, 2008:359), 규제의 완화나 폐지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는 것임(함인선, 2003:3)
- 따라서 규제개혁을 규제완화만으로 이해하면 안되며, 규제목적의 효율성과 더불어 효과성을 고려하여 투명성, 비례성, 책임성, 일관성 등 규제원리나 규제요건 충족을 위한 관리(이원우, 2008:358)도 규제개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결국 규제개혁은 좋은 법질서를 만들고 사회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2. 농업·농촌부문 규제개혁 방향2)

### 1)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 첫째,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보전, 환경보호 및 식품안전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규제는 보다 강화되어야 함
- 농업 생산주체에 대해 가족농 등 영세소농은 직불제 등 재정지원 수단을 활용하고, 농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의 농업참여 등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 둘째, 규제를 정책목표에 적합한 제도기반이 되도록 개선하는 전략적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함
- 현실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규제완화 중심에서 나아가 정책적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구축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함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농업·농촌부문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197-219를 참고 및 요약함

- 셋째,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여 규제비용을 분석하고, 규제비용이 큰 규제에 대해 폐지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정책품질을 제고해야 함
- 신설 및 강화 규제만이 아니라 폐지 및 완화를 검토할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여야 함
- 넷째, 타 부처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되어야 함
- 농식품분야 규제에는 타 부처 규제가 정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이의 규제비용총량관리에서도 유인제공을 하여야 함
- 다섯째, 부처 내 전문가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신설 및 강화 규제에 대해서 규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규제심의위원회가 있으나 전략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함

## 2) 전략적 규제개혁 추진

### 가. 농업부문 투자 유치 및 규모화를 촉진

-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 전문화는 토지·노동 중심의 전통적 농업에서 기술과 자본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기술, 자본, 전문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거나 촉진하고, 도시자본과 농촌자본이라는 경계 구분과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경계구분도 의미가 낮으므로 이러한 부분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지관련 규제는 전통농업 중심으로 제정되어 첨단농업 및 고부가가치 농업기법의 적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농업 관련 기업연구소의 연구용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것을 완화한 바와 같이 IT·BT 등 첨단기술을 농업분야에 접목하는 것을 촉진하는 진입규제 및 허가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영농의 전문화는 새로운 과학적 기법과 우수한 ICT 기술 및 전문 인력이 영농에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
- 농업의 규모화, 전문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농업생산법인의 진입을 촉진 하도록 하는 규제완화 추진이 필요함

#### 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을 위한 입지규제의 개선

- 농식품분야의 6차 산업화는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므로 전통적인 영농으로 인식되는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 제조, 유통 및 관광 등이 어우러지는 융·복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현재 농지와 임지는 생산 이외의 시설입지 제한이 있으므로 6차 산업화 촉진에 애로가 있음
- 농지의 입지규제를 복합영농이 가능하도록 다른 산업의 도입을 위한 농지를 정비, 특히 농지로서 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함
- 농지와 임야의 입지규제를 금지가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농업과 융합하는 조건이라면 입지가 가능토록 규제관리방식을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 system)에서 금지행위 열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 농업경영체의 사업범위 확대

- 농업의 6차 산업화는 자본의 유입과 규모화, 전문화를 전제로 종래 생산의 개념에서 가공, 유통 및 관광 등의 복합화를 지향해야 함
- 6차 산업화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범위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함

- 농지의 임대차계약 허용 등의 보다 완화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6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업범위 확대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생산(임대차), 가공(공장건축 입지), 유통(광고·표시) 등 많은 분야의 인허가를 one-stop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보완되어야 함

#### 라. 새로운 농식품의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 현재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안전 등으로 원료사용과 가공에 대한 규제가 강한 수준임
- 새로운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의 개발은 다양한 원료의 사용과 창의적이고 다양한 가공방법 등을 필요
- 원료의 사용범위에 있어서는 원료사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신청 자격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 등을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인정 범위에서 신청자격에 수입업자와 제조업자에 한정 등의 개선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 등의 개선도 필요함

#### 마. 전문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지원제도의 정비

- 농림산업의 대형화, 전문화, 6차 산업화 등 미래 산업으로의 발전은 농식품 분야로 투자 자본과 기술력의 이동을 요구함
- 그 중에서도 농림산업으로의 전문적인 인력의 이동을 통해 현재의 농촌의 고령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이를 촉진하기 위해 귀농촉진 지원제도의 마련과 기존의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귀농, 귀촌의 정주여건의 조성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음

### 3. 축산·수의 분야 규제개혁의 특수성<sup>3)</sup>

- 축산업은 동물성 단백질원을 식품으로 공급하는 산업으로, 산업화, 소득증가, 식습관 서구화 등에 따라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계속 성장되고 있는 미래성장형 1차 산업임
- 가축의 사육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사육농가 수는 감소하여 전업화, 규모화되는 추세임. 축산업은 사료, 축산시설 등 요소 투입 전방 산업과 축산물 가공, 유통, 식료업 등 후방산업과 함께 부가가치 창출이 높고 고용유발 효과가 크므로 진흥정책이 필요함
  - 농림업 생산액에서의 축산업 비중 : ( '06) 32% → ( ' 16) 39%
  - 축산농가의 소득 증가 : ( '06) 4,825만 원 → ( ' 16) 7,743만 원
  - 전체 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 : 축산농가 73% vs 전체농가 27%
  - 사육마릿수 : ( '06) 한육우 2.0백만두, 젓소 0.5, 돼지 9.3, 닭 119.0  
( '16) 한육우 2.7백만두, 젓소 0.4, 돼지 10.3, 닭 170.0
  - 축산농가수 : ( '06) 한육우 1,902백호, 젓소 83, 돼지 113, 닭 36  
( '16) 한육우 899백호, 젓소 54, 돼지 46, 닭 30
- 축산업은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부하가 발생하여 환경부에서는 수질, 토양, 대기환경에 대하여 방류수, 양분, 악취 등을 규제하고 있음
- 이런 환경에 대한 부하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시설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나 가축단위 발생량 추산에 대한 일률적 규제 등으로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sup>3)</sup> 박혁(2019), 「축산·수의 분야 분야별 핵심규제 현황과 정책과제」, GS&J Institute, 6을 참고 및 요약함

- 신종 발생 동물전염병(MERS, SARS, Nipahvirus 등)의 75%는 인수공통 전염병이고 질병으로 인한 사람생명 손실 기간(Disability-adjusted life years)의 10%가 인수공통질병으로 이에 따라 공중보건학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특히, 해외 악성 전염병의 유입 시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살처분 보상금 등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육류도매업, 가공업, 관광산업 등에서의 2차 피해액까지 포함하면 사회적 피해는 극심함. 또한 동물생산과정의 20%의 손실은 가축질병에 의한 것이므로 가축 위생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공중보건, 식품안전, 동물복지, 동물위생 그리고 주변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One-Health 관점의 축산업 발전대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강력한 규제정책과 함께 강력한 진흥정책이 동시에 요구되며 정밀한 조절이 요구되는 분야로 규제기관(환경부, 식약처)과 진흥기관(농식품부)의 분리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빈번히 발생함
-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양육가구수도 늘어나 두 자리 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4.1%씩 성장하여 2017년 약 2조 3,3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 반려동물 사료 19.4%, 동물용의약품 14.8%, 동물병원 14.7%, 반려동물용품 10.2%로 반려동물 연관산업별 시장성장률(KB금융지주, 2018.12)은 매우 높음
- 그러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은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이 법의 목적은 동물의 학대 금지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반려동물을 다루고 있고 반려동물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반려동물의 사육두수 및 연관산업의 통계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가칭 「반려동물산업진흥법」, 「반려동물사료관리법」 등의 제정 및 반려동물 전담 행정조직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 및 연관산업 발전 로드맵 개발이 필요함

#### 4. 농림·산림 분야 규제개혁심사

- 규제개혁위원회는 2021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하여 「식물방역법」 등 총 14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8건의 규제를 심사하였고, 심사대상 28건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표 III-1] 2021년 농림·산림 분야 규제개혁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예비심사 (2021.3.5.)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1)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예비심사 (2021.5.7.)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5.14.)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격리재배 검역요령	예비심사 (2021.5.21.)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농어업회의소법	예비심사 (2021.6.4.)	원안의결6	신설6 (비중요6)
수의사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6.25.)	원안의결3	신설3 (비중요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21.7.9.)	원안의결3	신설4 (비중요3)
식품산업진흥법	예비심사 (2021.7.16.)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1)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8.2.)	원안의결2	신설1, 강화1 (비중요2)
식물방역법	예비심사 (2021.10.1.)	원안의결5	신설5 (비중요5)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10.14.)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1)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1)
전통식품 표준규격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계		원안의결28	신설23, 강화5 (비중요28)

○ 이는 다른 부처와 비교하여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표 III-2] 2021년 농림·산림 분야 규제개혁 심사결과 부처별 비교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21년도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D+E +F+G)	철회 권고 (D)	개선 권고 (E)	부대 권고 (F)	원안 동의 (G)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	14	12	2	0	1	0	1
경찰청	4	4	4	0	0	0	0	0
고용노동부	24	46	42	4	0	1	0	3
공정거래 위원회	10	22	21	1	0	1	0	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3	33	32	1	0	1	0	0
관세청	6	6	6	0	0	0	0	0
교육부	18	25	22	1	1	2	0	0
국가보훈처	12	35	35	0	0	0	0	0
국민권익 위원회	3	4	4	0	0	0	0	0
국세청	1	1	1	0	0	0	0	0
국토교통부	116	221	214	7	0	3	0	4
금융감독원	3	4	4	0	0	0	0	0
금융위원회	48	101	88	13	2	6	3	2
기상청	5	11	11	0	0	0	0	0
기획재정부	5	7	6	1	0	1	0	0
농림축산 식품부	14	28	28	0	0	0	0	0
농촌진흥청	4	8	8	0	0	0	0	0
문화재청	5	9	9	0	0	0	0	0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21년도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D+E +F+G)	철회 권고 (D)	개선 권고 (E)	부대 권고 (F)	원안 동의 (G)
문화체육 관광부	6	13	13	0	0	0	0	0
방송통신 위원회	3	4	4	0	0	0	0	0
법무부	8	19	17	2	0	0	0	2
보건복지부	30	50	48	2	0	0	0	2
산림청	10	14	12	2	0	2	0	0
산업통상 자원부	43	83	82	1	0	0	0	1
소방청	25	32	32	0	0	0	0	0
식품의약품 안전처	36	65	63	2	0	1	1	0
여성가족부	4	4	4	0	0	0	0	0
외교부	1	1	1	0	0	0	0	0
원자력안전 위원회	8	11	11	0	0	0	0	0
인사혁신처	11	11	11	0	0	0	0	0
중소벤처 기업부	6	7	7	0	0	0	0	0
질병관리청	5	7	7	0	0	0	0	0
특허청	1	1	1	0	0	0	0	0
해양경찰청	2	3	3	0	0	0	0	0
해양수산부	55	79	77	2	0	2	0	0
행정안전부	17	30	30	0	0	0	0	0
환경부	73	116	112	4	0	2	2	0
계	647	1,129	1,082	47	3	23	6	15

## 제2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규제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77개의 법률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대통령령으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7개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행규칙으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74개가 있음
- 규제는 보통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어야 함.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가하는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하고, 법률에서 대강의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에 위임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도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 그리고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복잡·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 현대행정의 양상임을 고려할 때, 형식상 법률상의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작용과 국민생활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마저 행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사의 근본적 결정권한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로써’라고 한 것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음(헌재 2018. 5. 31. 2015헌마476)

## 2. 규제의 법률 위임 필요성

- 따라서 규제를 담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법률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을 하게 되면 헌법에 위반되게 됨
-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함
-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 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임

### 제3절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전략

#### □ 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의 적용 배제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과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의 보호, 안전과 보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과 휴식(제4장) 및 여성과 소년(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농림산업과 축산·양잠·수산 산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그러나 농림·축산·양잠·수산 산업의 의미와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불분명함. 또한 최근에는 농림·축산·양잠·수산 산업이 전통적인 형태와 더불어 스마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있어서 농림, 수산, 축산 분야는 다른 업종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농림, 수산, 축산 분야를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따라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것도 타당한 면이 있음. 자가용 자동차는 출퇴근이나 일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아님. 따라서 이를 사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등에서 자동차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이 열악한 환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표 III-3] 행정리 기준 대중교통 운행횟수 비교(2010년 vs. 2015년)

행정구역별	연도	전국		읍부		면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총 행정리 수 (행정리)	2010	36,498	100.0%	8,212	100.0%	28,286	100.0%
	2015	36,792	100.0%	8,698	100.0%	28,094	100.0%
	증감	294	0.0%	486	0.0%	-192	0.0%
대중교통 운행 행정리 수	2010	34,639	94.9%	7,722	94.0%	26,917	95.2%
	2015	35,913	97.6%	8,503	97.8%	27,410	97.6%
	증감	1,274	2.7%	781	3.7%	493	2.4%
시내버스 (군내) 운행 행정리 수	2010	33,128	90.8%	7,348	89.5%	25,780	91.1%
	2015	34,443	93.6%	8,181	94.1%	26,262	93.5%
	증감	1,315	2.8%	833	4.6%	482	2.3%

행정구역별			연도	전국		읍부		면부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운 행 횟 수	10 회 미 만	1~3	2010	3,580	10.8%	507	6.9%	3,073	11.9%
			2015	4,390	12.7%	603	7.4%	3,787	14.4%
			증감	810	1.9%	96	0.5%	714	2.5%
		4~6	2010	8,377	25.3%	1,207	16.4%	7,170	27.8%
			2015	9,208	26.7%	1,573	19.2%	7,635	29.1%
			증감	831	1.4%	366	2.8%	465	1.3%
		7~9	2010	3,742	11.3%	530	7.2%	3,212	12.5%
			2015	3,907	11.3%	596	7.3%	3,311	12.6%
			증감	165	0.0%	66	0.1%	99	0.1%
	10 회 이 상	10~ 15	2010	5,566	16.8%	1,040	14.2%	4,526	17.6%
			2015	5,595	16.2%	1,034	12.6%	4,561	17.4%
			증감	29	-0.6%	-6	-1.5%	35	-0.2%
		15 ~	2010	11,863	35.8%	4,064	55.3%	7,799	30.3%
			2015	11,343	32.9%	4,375	53.5%	6,968	26.5%
			증감	-520	-2.9%	311	-1.8%	-831	-3.7%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소멸위기 지방도시의 지역 유형별 이동권 확보방안 연구” . p.2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산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농어촌에서 승차공유방식을 허용하여 열악한 대중교통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많다고 할 수 있음

- 농어촌 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대보다 다른 시간대에 이동이 많은데, 출·퇴근 시간대에만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시의 경우만 혜택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이 일정 수준 이하인 농어촌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농기계 등 물품 내용연수 차이

- 「농업기계화 촉진법」상의 농기계 내용연수와 「물품관리법」상의 내용연수가 상이하여 농기계 내용연수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 불분명함

[표 III-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농업기계	내용연수
1. 경운·정지용 기계	
가. 동력경운기	6년
나. 농업용 트랙터	8년
다. 그 밖의 경운·정지용 기계	6년
2. 재배관리용 기계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다. 농업용 방제기	5년
라. 동력파종기	5년
마. 동력이식기	5년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5년
3. 수확조제용 기계	
가. 동력수확기	5년
나. 동력예취기	5년
다. 농업용 콤바인	5년

라. 동력탈곡기	8년
마. 농산물건조기 · 곡물건조기	8년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5년
4. 농업용 엔진	8년
5. 농업용 양수기	8년
6. 가정용 도정기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5년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표 III-5] 내용연수표(차량 제외)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	10131601	애완동물사육장	9
2	10131702	수중생물용유리상자및수조	8
3	10191703	포충기	7
4	20101601	광업용스크린	10
5	20101706	쥬크러셔	11
6	20101707	크러싱플랜트	11
7	20101709	블밀	11
8	20101710	미분쇄기	11
9	20101711	록브레이커	7
10	21101501	쟁기	10
11	21101502	쇄토기	10
12	21101503	관리기	10
13	21101504	제초기	10
14	21101506	그레이더또는정지기	9
15	21101508	잔디밭및운동장용롤러	10
16	21101518	토양소독기	9
17	21101590	농업용인양장비	10
18	21101592	경운기	11
19	21101598	배토기	9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20	21101601	과종기	10
21	21101602	이식기	10
22	21101612	종자발아기	9
23	21101701	예취기	9
24	21101702	건초기	9
25	21101703	수확기	10
26	21101704	콤바인	9
27	21101705	탈곡기	10
28	21101706	작물분절기	10
29	21101709	목초결속기	8
30	21101710	수확용건조기	10
31	21101788	곡물이송기	9
32	21101801	분무기	9
33	21101803	살수기	9
34	21101804	비료살포기또는분배기	10
35	21101806	퇴비살포기	10
36	21101897	동력살분무기	9
37	21101899	농축산용방역장비	8
38	21101901	착유기	10
39	21101903	가금의부란기와양육기	10
40	21101904	사료배합기	11
41	21101906	계란검사및선별기	8
42	21101915	돼지등지방측정기	10
43	21101982	사료절단기	10
44	21102001	정선기	9
45	21102002	종자또는곡물선별기	10
46	21102004	정미기및현미기	10
47	21102005	제분기	9
48	21102006	곡물분쇄기	10
49	21102098	선과기	9
50	21102102	압착추출기	9
51	21102202	잡목벌채기	7
52	21102204	벌목톱	8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53	21102206	임업용생장추	9
54	21102299	임업용집재기	10
55	21102399	수경재배장치	7
56	21102402	양잠장비	10
57	22101502	그레이더	11
58	22101505	롤러	10
59	22101525	차륜굴착기	9
60	22101526	궤도굴착기	8
61	22101528	차륜로더	7
62	22101529	스키드스티어로더	7
63	22101531	제설기(除雪機)	8
64		생략	

- 예를 들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동력 경운기는 내용연수를 6년으로 하고 있으나, 「물품관리법」 상에서는 경운기의 내용연수를 11년으로 하고 있음
-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기계의 내용연수와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가 상이하여 농기계 폐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상의 내용연수와 「물품관리법」의 내용연수를 일치시켜 농기계 폐기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요건

- 국가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 요건)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업 관련 학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농수산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농어업 분야의 경영·기술 교육을 이수했을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專業)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되고자 하는 경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후계농어업인이어야 하는데,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나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하고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함(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연령적으로 50세 미만의 경우 대다수가 고등학교 혹은 대학은 이미 졸업하였거나 졸업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상의 농어업 관련 학과나 지정·고시된 농수산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음
- 보통의 경우는 10대에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에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바,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농어업 분야의 경영·기술 교육을 이수하여도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선정 요건

- 국가는 영농의지와 기본역량을 갖춘 청년농을 선발하고,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지원·관리하는 체계 구축하여 청년창업형 후계 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 총 영농기간 또는 총 영어기간이 3년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 요건)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 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일 것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기간 또는 총 영어기간이 3년 이하 일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 농업이나 어업경영의 경우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I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농업, 스마트어업을 도입하여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음. 과거에는 토지만 있으면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농업 경영이나 어업경영을 할 수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농업이나 어업 관련 다양한 기술 등을 습득하여야 하는바, 농업이나 어업 경영을 하면서 이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과거 보다는 더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농업이나 어업의 경우 점차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 영농 또는 총 영어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 이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농업회사법인 설립 주체 제한**

- 현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한정되어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정해진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만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다만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총출자액의 80%로 제한하고 있음
- 농업법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표 III-6] 특성별 농업법인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20년 기준						2021년 기준						
	농업법인		영농 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농업법인		영농 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체	24,499	100.0	10,136	100.0	14,363	100.0	25,605	100.0	11,337	100.0	14,268	100.0	
사업 유형별	작물재배업	7,011	28.6	3,304	32.6	3,707	25.8	7,548	29.5	3,848	33.9	3,700	25.9
	축산업	1,460	6.0	678	6.7	782	5.4	1,626	6.4	832	7.3	794	5.6
	농축산물 가공업	5,093	20.8	1,830	18.1	3,263	22.7	5,552	21.7	2,038	18.0	3,514	24.6
	농축산물 유통업	7,600	31.0	2,560	25.3	5,041	35.1	7,337	28.7	2,727	24.1	4,609	32.3
	농업서비스업	505	2.1	286	2.8	219	1.5	462	1.8	265	2.3	197	1.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976	4.0	613	6.0	363	2.5	1,043	4.1	681	6.0	362	2.5
	기타사업	1,853	7.6	865	8.5	988	6.9	2,037	8.0	944	8.3	1,092	7.7

구 분		2020년 기준						2021년 기준					
		농업법인		영농 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농업법인		영농 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종사자 규모별	1인 이하	8,339	34.0	3,142	31.0	5,197	36.2	7,121	27.8	3,613	31.9	3,508	24.6
	2~4인	8,802	35.9	3,484	34.4	5,318	37.0	11,582	45.2	4,456	39.3	7,126	49.9
	5~9인	5,163	21.1	2,672	26.4	2,491	17.3	4,777	18.7	2,487	21.9	2,290	16.0
	10~49인	2,075	8.5	811	8.0	1,264	8.8	1,954	7.6	724	6.4	1,230	8.6
	50인 이상	120	0.5	27	0.3	93	0.6	171	0.7	57	0.5	114	0.8
운영 기간별	3년 이하	6,690	27.3	1,129	11.1	5,562	38.7	3,518	13.7	591	5.2	2,927	20.5
	4~7년	8,121	33.1	2,625	25.9	5,496	38.3	8,592	33.6	2,240	19.8	6,352	44.5
	8~12년	6,079	24.8	3,759	37.1	2,319	16.1	7,709	30.1	4,167	36.8	3,543	24.8
	12년 이상	3,609	14.7	2,623	25.9	986	6.9	5,786	22.6	4,339	38.3	1,447	10.1

○ 농업법인 출자자 수도 증가추세임

[표 III-7] 농업법인 출자자 수

(단위 : 개, 명)

구 분		2020년 기준						2021년 기준							
		법인수	출자자 수	출자자				법인당 출자자 수	법인수	출자자 수	출자자				법인당 출자자 수
				농업인	비 농업인	생산자 단체	기타 법인				농업인	비 농업인	생산자 단체	기타 법인	
전체		24,499	236,319	219,004	16,083	559	673	9.6	25,605	258,055	238,155	18,339	816	746	10.1
	영농 조합 법인	10,136	149,042	145,159	3,496	306	81	14.7	11,337	166,738	161,059	5,100	387	193	14.7
	농업 회사 법인	14,363	87,277	73,845	12,587	252	592	6.1	14,268	91,317	77,096	13,239	429	553	6.4

○ 농업법인 출자금 규모도 증가추세임

[표 III-8] 농업법인 출자금 규모

(단위 : 개, 억 원)

구 분	2020년 기준							2021년 기준						
	법인수	총 출자금	농업인	비농업인	생산자 단체	기타 법인	법인당 출자금	법인수	총 출자금	농업인	비농업인	생산자 단체	기타 법인	법인당 출자금
전체	24,499	69,275	53,415	11,081	722	4,057	2.8	25,605	77,017	61,345	10,966	1,645	3,062	3.0
영농조합법인	10,136	22,290	21,283	778	155	74	2.2	11,337	28,639	26,169	1,965	429	75	2.5
농업회사법인	14,363	46,985	32,132	10,303	567	3,983	3.3	14,268	48,378	35,175	9,001	1,216	2,987	3.4

- 농업인뿐만이 아니라 비농업인도 농업회사법인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회사법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스펙트럼이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매우 광범위한데, 최소한 생산 분야와 그 외 분야는 구분하고 농업인의 비중과 농지소유 여부 역시 구분된 분야에 따라 따로 정할 필요 있음
- 농업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을 50% 이하로 하고, 대표 및 임원의 과반이상을 농업인으로 하며, 이 경우에 한해서만 농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반면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이 전체 업무의 50%를 초과할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은 높여, 농지소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임영환, 2021:17)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야영장업 허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 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야영장업은 서로 상이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기준 등이 상이함
- 농어촌체험·휴양사업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야영장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임
- 그러나 농어촌체험·휴양사업과 야영장업의 설치조건 등이 상이하여 농어촌 체험·휴양사업자가 소규모 야영장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농어촌체험·휴양사업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표 III-9]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

구분	시설의 종류	준수사항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가. 폐교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추는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는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는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 7)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는 것

	<b>나. 그 밖의 마을공동시설</b>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추는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추는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추는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추는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는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추는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추는 것
<b>2. 안전 시설 기준</b>	<b>마을공동시설</b>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 야영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규정된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지만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음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화재 예방기준, 전기 사용 기준, 가스 사용 기준, 대피 관련 기준,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위생 기준 등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많음
- 이는 야영장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농어촌체험·휴양사업자는 농어촌에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것으로 소규모의 야영장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야영장업은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하고,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함(「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따라서 농어촌체험·휴양사업자는 농어촌에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것으로 소규모의 야영장업을 하기 어려운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이를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농어촌체험·휴양사업의 하나로 캠핑장업이라는 명칭으로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관광진흥 관련 법령의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와 기준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 3. 19.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대비하여 인력수급 관리 강화와 공공부문 인력공급 대폭 확대, 주산지 중심 인력수급 집중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 국내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올해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2년 154개소(농촌형)에서 그동안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9개 시·군[경기(김포, 여주), 충북(괴산, 보은, 음성, 증평), 충남(홍성), 경북(군위), 경남(산청)]을 추가하여 '23년 170개소로 확대 지원
  - 둘째, 올해 1월 농식품부와 고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도시 구직자 모집 활성화로 농번기 인력 부족 농가에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이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부 취업지원기관을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전북(완주, 무주, 장수, 고창, 임실), 경북(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청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

- 셋째, 2023년 2월 13일 서비스를 개시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구직자가 희망하는 관심 지역, 농작업 종류 등을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구인공고 등록 시 실시간으로 구직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정보 제공 등)과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을 강화
  - 넷째, 지난해 시범 운영하였던 농협과 연계한 체류형 영농작업반(지역별 농번기에 20인 내외의 도시인력을 모집, 1개월 내외로 농촌에 체류시키며 농가에 인력공급(근로자에게 교통비·숙박비·보험료 지원))도 도시지역 구직자 모집을 확대하여 지난해 20개소 2만 명에서 올해 30개소 3만 명을 운영할 계획
  - 다섯째,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지자체를 통한 농촌일손돕기 참여 인원도 대폭 확대. 일손돕기는 지자체에서 사전에 농가의 수요를 받아 중소 농가, 단순 농작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주요 품목의 인력 부족 지역·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 예정
- 따라서 2023년에는 역대 최대로 약 3만 8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 분야에 배정되었음(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3.03.19, 검색일: 2023.03.24.)
  - 그러나 계절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 근로자 총 1만 9,472명 중 상반기에 입국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1만 3,7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는 하반기 입국 예정인 8개 시군 1,450명과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11개 시군 1,002명은 제외한 수치임(한국농어민신문, 2022.05.20, 검색일: 2023.03.20.)
  - 농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농번기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들이 협의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수급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는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농촌 일손 부족문제를 해소시켜 주고, 장기적으로는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실질적인 농어가의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외교부와 협의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대기 중인 해당국과 협의해 국내 입국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2023. 2. 14) 2024. 2. 15.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나,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등이 열악한 탓에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 역시 저조한 실정임
- 농어업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다른 산업 분야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농수산물 생산의 근간이 와해되어 식량안보와 농어촌사회의 유지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고용노동부가 산업과 직종을 총괄하여 고용정책을 주관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과 농어업 노동의 특성이 도시지역 및 타 산업 부문과 크게 다르므로 농어업 부문의 고용인력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많음
- 또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가 있지만 인력 수요가 봄, 가을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어가의 일손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

- 따라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정부가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근무환경 개선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고용인력 육성과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동법에는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고용인력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④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문화생활의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 지원)

-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현대행정국가에서 위임입법은 필요하고 위임입법을 통하여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음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과도한 규제나 불필요한 규제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총회 의장 선출**

-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동법 제9조에서는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두도록 되어 있음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③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2. 의장, 부의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에 관한 사항
3.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에 의하면 총회 의장 선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11조(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① 총회 의장 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선거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 의장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일시, 선거 장소 및 후보자 등록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1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보자 등록 장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단체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 ⑤ 총회 의장 선거에서 최다(最多) 득표한 후보자(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이하 “최다득표자”라 한다)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의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만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총회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총회 의장으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
- ⑦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 의장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⑧ 제2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의장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는 총회 의장의 자격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일 기준 2년 이내에 의무 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는 총회 의장선출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또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도 총회 의장선출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의장선출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다시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아서는 자격제한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음
-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그 대강이라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여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자격제한 사항이 무엇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저온저장고 설치

-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은 이를 위한 보조를 확대하는 추세임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서는 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고시일 현재 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2.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다만, 시설물이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토지를 굴착(땅파기)하는 행위. 다만, 경작이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지 분할
5.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6.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7.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다만,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9.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 다만, 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에 따라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로 시설물이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로 1. 양잠, 버섯, 종묘(種苗)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물, 2. 고추, 잎담배,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퇴비장을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양잠, 버섯, 종묘(種苗)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물
2. 고추, 잎담배,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퇴비장

- 그러나 농촌에서 많이 사용되는 저온저장고는 규정이 없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 따라서 적은 규모의 저온저장고는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을 두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저온저장고와 관련해서 제21대 국회에 박영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8월 26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축법 적용제외(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표 III-10]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적용제외)

현 행	개 정 안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농어업 목적의 10㎡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  ②·③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를 보면 일반적인 농가의 저온저장고는 10㎡ 이하 소규모임. 이 또한 현행법 상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설계·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신고 없이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 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법에 불부합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음
- 이에 10㎡ 이하의 농어업 목적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의 적용제외 항목에 추가하여 건축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의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농·어업 목적의 10㎡ 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개정안은 일반적인 농가의 저온저장고는 10㎡ 이하의 소규모인데, 현행법상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설계비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 없이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10㎡ 이하의 농어업 목적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의 적용 제외 항목에 추가하여 건축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의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음
  - 읍·면지역에서 농업·수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일정 규모 이하(200㎡ 이하)의 창고는 건축신고<sup>4)</sup>만으로 건축이 가능하여 관련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어 있고, 공사감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컨테이너 형식의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 축조신고<sup>5)</sup>만으로 건축이 가능하여 건축감리, 접도규정, 건축선,

4)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4. (생략)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②~⑤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①② (생략)

-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2.~4. (생략)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④ (생략)

5)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④~⑦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략)

-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

구조안전확인, 피난·방화기준,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 대부분의 적용을 제외 받고 있음

- 또한, 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에서 제외<sup>6)</sup>되는 등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개정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 15. (생략)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⑧ ~ ⑩ (생략)

#### 6)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④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 (생략)

□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이상저온

-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가뭄, 홍수, 태풍, 이상저온, 우박,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작물, 가축 및 산림작물 등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은 이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 최근에 기후변화로 이상저온뿐만이 아니라 이상고온(異常高溫)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저온만을 포함하고 있고 이상고온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많지만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따라서 ‘이상저온’을 ‘이상기온’으로 개정하여 이상저온뿐만이 아니라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도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에 있어서 남녀차별 해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따라서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도 이에 관하 규정을 두고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이 받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건강검진 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님
- 이에 반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는 여성농어업인과 비교하여 남성농어업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남성농어업인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임
- 따라서 남성농어업인도 여성농어업인과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의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 완화

- 지역특산주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을 의미함(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 위에서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하나,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됨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6.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

7.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8. “유기가공식품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말한다.

- 이 경우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주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량의 다른 지역의 원료라든가 수입 원료를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사용하는 경우 지역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따라서 소량의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3% 미만의 다른 원료를 두 번째 원료나 세 번째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역특산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지역특산주는 양조장이 위치한 지역과 인접한 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므로 많은 제약이 따름
- 예를 들어 강화막걸리와 제주 굴피를 혼합하면 지역특산주가 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지역특산주의 다양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 영농조합법인 등의 임원요건 완화

-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 자격에 제약을 받고 있음. 그 결과, 농수산물 생산 외 가공·유통·판매 등 사업분야에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여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 ⑦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을 조합원,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또한, 준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제한범위를 총회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및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영 관련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음
- 한편 정부는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의 영구성과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높아 특히 주목을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농촌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농촌경제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핵심조항인 사업범위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나치게 엄격하여, 낙후된 농촌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도 가능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농조합법인은 영위할 수 없는 상황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② 법 제19조의4제2항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어업·양식업의 경영
2.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어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6.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7.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 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나.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 다.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라.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 마.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따라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도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 농업진흥구역 내 LED적용 재배시설 도입 허용

-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다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농지법」 제32조)
-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만을 허용하고 있음

- 스마트농업 등 IT 기술을 이용한 농업을 확대하고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LED적용 재배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고 IT기술을 활용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 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 인삼류 표시기준 완화

-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인삼사업법이 시행되고 있음
- 「인삼산업법」에서는 홍삼·태극삼·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와 자가 제조한 홍삼·태극삼·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그리고 홍삼·태극삼·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인삼산업법」 제17조 제1항)
-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인삼산업법」 제17조 제3항)
- 그러나 인삼의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표시검사 등 다양한 필수 검사제도 의무화가 농가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오랜 검사 기간으로 출하 시간이 늘어나 성수기에는 적기 납품이 어려운 점이 발생함

- 특히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으며 영세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인삼류의 경작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인삼류의 연근표시를 자율화하고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원산지 표시의무는 유지하되, 연근표시를 희망하는 인삼류 제조자만 연근별로 구분 제조 후 표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등록 간소화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함
- 다만,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매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 도매시장은 투자 주체별로 공영도매시장, 일반법정 도매시장, 민영 도매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농안법상 분류로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이 있음

-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축수산물도매시장 중 당해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을 말함
- 지방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시가 개설하되, 시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도매시장을 말함
-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도매시장을 말함
- 도매시장을 종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I-11] 도매시장 종류별 개소

(단위 : 개소)

구분	도매 시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소계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약용	소계	청과	수산
계	49	122	89	27	4	-	2	63	60	3
공영 도매시장	33	107	82	25	-	-	-	63	60	3
일반법정 도매시장	13	12	5	2	3	-	2	-	-	-
민영 도매시장	3	3	2	-	1	-	-	-	-	-

자료: 농식품부(2020). 「2019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사)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홈페이지 <https://kawa.or.kr> 참고.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산지유통인은 다수의 도매시장과 거래가 필요하나 도매시장마다 등록이 필요함
- 따라서 산지유통인은 수 개의 도매시장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산지유통인의 원활한 상인활동을 위하여 도매시장 등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최소한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하나의 도매시장에 등록을 하면 다른 공영도매시장에는 별도의 등록없이 도매시장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 지리적표시제

-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목적임.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산가공품과 달리 바다라는 생산지와 양륙지의 지리적·인적 특성이 어우러져 특정 품질 특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지역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원료의 생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리적표시의 정의에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
- 그 결과,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는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2차 가공품에 한정되며 어획어류 등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은 등록을 못하는 실정임
-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2022년 11월 기준 수산물은 15건·11품목, 수산가공품 12건·4품목이 등록되어 있음

[표 III-12]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구분	계	품목	건	등록명칭
수산물	11품목 (15건)	활꼬막	1	보성별교꼬막
		활전복	4	완도전복, 해남전복, 진도전복, 신안전복
		활키조개	1	장흥키조개
		넙치	1	완도넙치
		매생이	1	장흥매생이
		굴	2	여수굴, 고흥굴
		미꾸라지	1	남원미꾸라지
		미더덕	1	진동미더덕
		새고막	1	여자만새고막
		송어	1	평창송어
		가리맛조개	1	순천만가리맛조개

구분	계	품목	건	등록명칭
수산물 가공품	4품목 (12건)	미역	3	완도미역, 기장미역, 고흥미역
		다시마	3	완도다시마, 기장다시마, 고흥다시마
		김	5	완도김, 장흥김, 신안김, 해남김, 고흥김
		건우럭	1	신안우럭

-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에 따라 어획된 어류는 특정 지역 앞바다에서만 어획되는 것이 아닌 연근해 전반에서 어획되는 회유적 특성을 갖고 있는 바, 제품의 생산이 일정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지리적 연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리적표시를 득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현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는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2차 가공품에 한정되는 상황으로, 영광굴비·추자도참굴비·안동고등어·주문진오징어·인제용대황태·제주은갈치·포항과메기 등 회유성 어류를 원료로 하는 지역의 유명 수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닌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생산·제조 또는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만 등록 가능함
- 이에 허가어업에 따라 어획된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국내산 어류의 생산지역(어획지역)에 관계없이 이 어류를 원료로 하여 가공 지역의 특수한 처리방법 등에 따라 손질·염장·포장 등의 방식을 거쳐 가공한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산가공품 가공지역의 지리적·인적 특성을 인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청년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 청년 등에 지원을 보다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2. 12. 27. 법률 제19111호로 개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28. 시행) 제29조의2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사업 또는 홍보·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더불어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농업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

-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 제5호)과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 제7호)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형법」의 개정(2016.1.6.)으로 인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 외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
-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농협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이 될 수 있는 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 더 낮은 수준의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7호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으로 개정하여, 벌금형의 유예기간에 있는 자를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함

□ 비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규제 완화

-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에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미세하게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규제의 획일성” 문제를 초래하여 왔음
- 따라서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건강기능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여 규제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17조의2제1항(안) 및 제17조의3(안)을 신설하여 규제대상을 축소할 것을 제언함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b>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b>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	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① ----- -----포함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에서 같다----- ----- <b>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산물등”</b>



□ **감염병 등의 위기상황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소 검사 강도 완화**

-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 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천재지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 등의 위기상황에서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음
- 따라서 제20조의3(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할 것을 제언함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20조의3(제조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20조에 따른 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열람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소 등에 대하여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출입·검사·수거·열람과 조사·평가(이하 “비대면 조사 등” 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u></p>





□ 푸드테크 정의규정 신설을 통한 푸드테크산업 규제완화

-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식품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식품산업 분야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푸드테크 산업이 각광받고 있음
- 따라서 푸드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트렌드가 확산되고 식량안보가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서 푸드테크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제2조제8호·제9호(안), 제8조의2(안) 및 제8조의3(안)을 각각 신설하여 푸드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푸드테크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창업 지원,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푸드테크를 지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u>&lt;신 설&gt;</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u>“푸드테크”란 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 또는 생명공학기술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을 말한다.</u>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9. “푸드테크산업” 이란 푸드테크를 이용하는 식품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p> <p>제8조의2(푸드테크산업의 진흥)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li> <li>2. 푸드테크산업 관련 창업 지원</li> <li>3.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li> <li>4. 푸드테크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li> <li>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8조의3(우수 푸드테크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푸드테크를 우수 푸드테크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 푸드테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 유치 지원 또는 국제 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우수 푸드테크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	---

## 제4절 스마트농업 규제개혁 전략

### 1. 스마트농업의 개념과 목적

- 스마트농업은 스마트팜이라고도 불리는데, 스마트농업 또는 스마트팜에 대한 개념이 법령에 규정된 것은 없음
- 그러나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9조에서 스마트농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의2에서 스마트농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p><b>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b></p>	<p>제9조(농업혁신정책실) ⑥ 농업혁신정책실에 <b>스마트농업정책</b>과 · 첨단기자재종자과 · 과학기술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빅데이터전략팀 · 농업경영정책과 · 농지과 · 공익직불정책과 · 농업금융정책과 · 재해보험정책과 · 청년농육성정책팀 · 푸드테크정책과 · 식품외식산업과 · 수출진흥과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을 두되, 과학기술정책과장 및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빅데이터전략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청년농육성정책팀장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p> <p>⑦ <b>스마트농업</b>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팜 등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li> <li>2. 농업생명분야(<b>스마트농업</b>을 포함한다)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농식품분야 신기술 · 신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li> <li>4. 농식품분야 미래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실증단지 조성 · 운영에 관한</li> </ol>
---	--

	<p>6. 스마트팜 청년창업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p> <p>7. 스마트팜 수출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농식품혁신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p>
<p>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25조의2(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③ 교육훈련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사·문서·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li> <li>2. 훈령·예규·지침안의 입안</li> <li>3. 급여·회계·결산 및 용도</li> <li>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li> <li>5. 장단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평가</li> <li>6.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신규 교육훈련 연구·개발</li> <li>7.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li> <li>8. 농기계 및 <b>스마트농업</b> 관련 교육·전시관 운영 및 안전관리</li> <li>9.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li> </ol>

○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에서도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p>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9조 ⑦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스마트팜</b> 등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li> <li>2. 농업생명분야(스마트농업을 포함한다)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농식품분야 신기술·신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li> <li>4. 농식품분야 미래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b>스마트팜</b> 혁신밸리 및 실증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li> </ol>
--------------------------------	--

	<p>6. <b>스마트팜</b> 청년창업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p> <p>7. <b>스마트팜</b> 수출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농식품혁신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p>
<p>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5조(농업공학부) ② 농업공학부에 <b>스마트팜</b>개발과·에너지환경공학과·수확후관리공학과·재해예방공학과·발농업기계화연구팀 및 농업인안전보건팀을 두되, <b>스마트팜</b>개발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 또는 농업연구원으로,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은 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으로,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공업연구원 또는 농업연구원으로, 재해예방공학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농업기계화연구팀장은 공업연구원 또는 농업연구원으로,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으로 보한다.</p> <p>③ <b>스마트팜</b>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첨단공학기술 이용 생산공정 자동화 기술 연구</li> <li>2. 정밀농업 등 정보기반 농업생산시스템 연구</li> <li>3. 식물생산 공장 연구 및 종묘 대량증식 자동화시스템 연구</li> <li>4. 가축 사양관리 등 동물 생산공정 자동화 연구</li> <li>5. 삭제</li> </ol>

- 따라서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스마트농업’이라 하여 ICT 기술을 기반으로 농·축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지능적으로 제어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라 하기도 하고 있음(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2)
- 스마트팜이라 하여 비닐하우스·유리온실 등의 시설원예, 축사 등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원격·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고 하기도 함(국회예산정책처, 2022)

- 또한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을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함
- 스마트농업에 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규정은 있음
- 「농지법」 제32조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은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운데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서 제2조에서 제목을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으로 하고 있음
- 이외에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함
-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2조에서는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는 예외), 조례에서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을

구분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도 하고(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스마트농업만 개념 정의하고 있는 조례도 있음(강원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는 스마트농업에 관해서만 개념 정의하고 있는데, 제2조에서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이라 정의하고 있음
-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는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을 별도로 개념 정의하고 있는데, 제2조에서 ‘스마트농업’을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이라 하고 있고, ‘스마트팜(Smart Farm)’을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음

<b>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b>	제2조 ⑤ 4. “ <u>스마트물류센터</u> ”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한다.
-------------------------------------	--

- 스마트농업에 관하여 2022년 11월 10일 정부에서 발의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하 ‘스마트농업육성법’이라 함)을 보면 스마트농업에 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음
- 스마트농업이 적용되는 분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I-13] 스마트농업 적용 분야 및 내용

구분		내용
생산	시설원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서 기반 생장환경 관리 및 시설물 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온도, 습도, CO2, pH</li> <li>- 시설: 정전센서, 창문, 차양, 송풍기</li> <li>- 제어: 기상알림서비스, 기상관측장비, 원격관리</li> </ul> </li> </ul>
	노지농업	
	과수	
	식물공장(수직형 농장)	
	정밀농업	
	농기계	
	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서 기반 축사환경 시설물 제어 및 사양·질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시설센서: 온도, 습도, 암모니아, CCTV</li> <li>- 웹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li> <li>- 로봇착유기, 자동급여기, 화재, 미세먼지 제어</li> </ul> </li> </ul>
유통	산지유통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센터 경영 및 생산·가공·유통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거래시스템</li> <li>- 컴퓨터, 스마트폰, GPS, RFID, QR코드,</li> <li>- 비파괴 자동선별</li> </ul> </li> <li>• 가상판매점 등을 통한 농산물 전자거래</li> </ul>
	생산이력정보시스템	
	인터넷상거래	
소비	식자재 안심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등 식자재 안전·안심 정보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가공·유통 이력·인증정보</li> <li>- QR코드, 모바일 웹</li> </ul> </li> </ul>
	인터넷 상거래 (소셜커머스, SNS)	
관광	농촌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관광(체험정보, 주말농장, 문화, 축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PS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li> </ul> </li> </ul>

자료: 한국기상산업기술원(2022), “스마트농업 기술현황과 기상정보 융합 사례”, ISSUE PAPER 2022-01.

##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분석

- 스마트농업육성법안은 2022. 11. 10.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안되었고, 2023. 3. 1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가결된 법안을 바탕으로 내용을 분석함

### 1) 스마트농업육성법 목적과 내용

#### 가. 제안 이유

-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에 관한 지도·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의 도입,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주요 내용

#####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및 제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8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과 자격 취소 및 정지(안 제9조 및 제10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안 제14조 및 제1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안 제22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정함

## 2) 스마트농업육성법 분석

### 가.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의 필요성

- 우리 농업·농촌은 농업인의 감소 및 고령화, 곡물자급률 하락, 농가소득 정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빅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기술 등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음
-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자동화·무인화를 통해 농가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스마트농업은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미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입법임

## 나. 스마트농업육성법의 구성

- 스마트농업육성법은 제정안은 총 6장, 25조의 조문,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I-14]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안 세부 내용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6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실태조사)
제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제8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 제10조(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제12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13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16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제17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제20조(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제5장 보칙	제21조(자료제출의 요청) 제2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3조(청문)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6장 별칙	제25조(별칙)

- 제1장은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데이터를 정의하고,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2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중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제3장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관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4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육성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5장은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 스마트농업육성법의 내용별 분석

### □ 목적

- 스마트농업육성법안은 법의 목적이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는 단일법률이 없고 여러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규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와 제36조의2에서 농업 관련 기술개발추진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규정하고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확산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융복합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도 스마트농업 지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용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1.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보조 또는 용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일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보임

####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이 국가 단위의 중장기 목표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 □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률에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 플랫폼’이라 하여 ‘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 하고 있고(제21조의4 제3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 제8호)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합플랫폼’이라 하여 ‘국가지식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국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지칭하고 있으며(제2조 제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하여 ‘데이터의 연계·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음(제17조의2 제1항)
- 또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는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라 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등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적 통합 서비스 및 기반’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음(제2조 제6호)
- 그러나 플랫폼에 대하여 일반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플랫폼에 적용되는 법률들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음
-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정의를 법률안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로 지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스마트농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부재한 상황이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음

[표 III-15]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업무 수행 현황

구 분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업무 수행 현황
<p>농림수산물 교육문화정보원</p>	<p>【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 통합정보체계 구축</li> <li>•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 센터 구축</li> <li>•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생태계 조성</li> <li>•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 운영</li> </ul> <p>【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li> <li>• 스마트팜 ICT기업 재직자 전문교육</li> </ul> <p>【스마트농업 관련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데모온실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훈련)</li> </ul>
<p>한국농업기술 진흥원</p>	<p>【스마트농업 기술 실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운영</li> <li>• 디지털농업기술 현장실증 운영</li> </ul> <p>【스마트농업에 관한 표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기자재 국가표준확산지원사업</li> <li>•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 개발 및 제정</li> <li>•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운영</li> </ul> <p>【스마트농업 관련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 조성)</li> </ul>

구 분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업무 수행 현황
농림식품 기술기획평가원	<b>【스마트농업 관련 R&amp;D 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사업 운영</li> </ul> <b>【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 R&amp;D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li> </ul>
한국농어촌공사	<b>【스마트농업 관련 시설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 스마트온실 구축</li> <li>•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 지역 스마트온실 구축</li> <li>•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시설 구축</li> </ul>

-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별로 분산·중복되어 있는 스마트농업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뿐만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있는 경우 환수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3) 규제분석 결과

#### ○ 거점단지 내 육성지구 내 대부계약·사용허가

-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 시설 임차희망자에게 사용계획 제출 의무 부여
- 심사결과 :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해 도입되는 시설 등에 대한 특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임차인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기준 마련

- **(교부 요건)** ①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② 스마트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교육과정 이수
- **(취소·정지요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④ 스마트농업관리사 명의 사용·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
- **(심사결과)** 스마트농업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의 전문인력인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도시농업관리사 등 유사 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이 설정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마련

-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심사결과)** 체계적인 스마트농업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정취소 근거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제5절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제개혁 전략

### 1. 반려동물 연관산업 개요

#### 1)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및 고려사항

- 1인가구 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지역 커뮤니티 역할의 변화 등 개인생활 양식 및 양태의 변화하면서 개인 각자 독립된 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는 반려동물 관련 조사 및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인구총조사 항목을 통한 간접적인 추계 등을 통하여 추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숫자 및 산업분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반려동물의 전체 실태 및 산업동향, 추세 등을 확인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간 차이가 크며, 민간기업인 KB 금융지주의 반려동물 보고서나 패널조사인 오픈서베이, 어웨이, 한국펫사료협회 등이 각기 다른 조사치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제외하고는 약 23~29%의 가구수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반려동물 비율은 개와 고양이가 약 7:3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에 비추어 판단할 경우 비록 인구총조사 결과에 대한 여러 통계적 고려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체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는 약 600만 정도로 추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전체 반려동물 사업 전체 대상자 수는 600만 명 정도를 모수로 판단할 수 있음. 통계청을 제외한 모든 관련 보고에는 2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약 20% 초중반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반려동물 관련 조사에서의 한국 반려동물 양육가구수에 대한 파악 및 국내 다수의 반려동물 보유현황 조사 또한 최하 20%를 상회하는 비율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인구총조사와 더불어 조사된 통계청 반려동물 관련 가구조사는 실제 반려동물 양육현황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현황파악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현황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축산식품부의 관련 통계 및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III-16] 반려동물 관련 주요 조사별 양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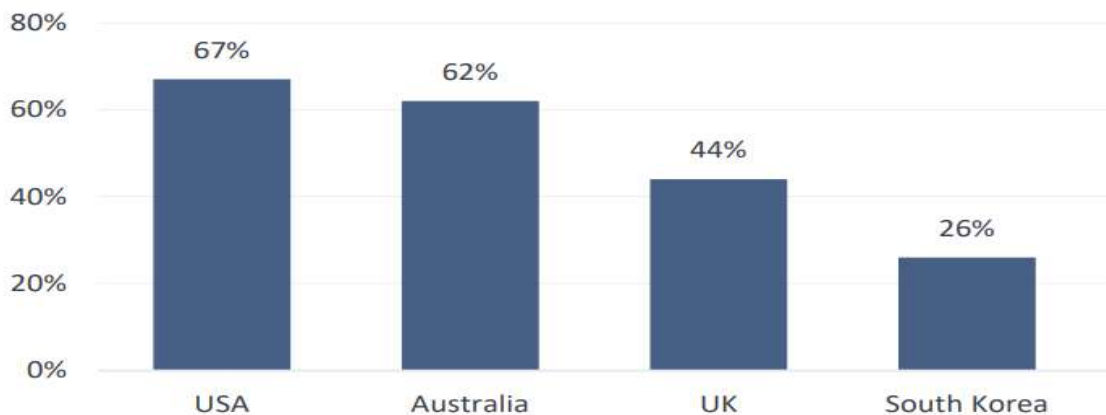
구분	인구주택 총조사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20)	한국반려 동물보고서 (2021)	반려동물 트렌드리포트 (2020)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1)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인식조사 보고서 (2018)
조사주체	통계청	농식품부	KB 금융지주	오픈서베이	어웨어	한국펫 사료협회
조사대상	전체가구의 20%	20~64세 남녀 5,000명	20세 이상 남녀 1,000명	20~59세 남녀 2,500명	20~69세 남녀 2,000명	19~59세 남녀 2,000명
조사방식	대면/ 비대면병행	온라인 패널조사	온라인 패널조사	온라인 패널조사	온라인 패널조사	온라인 패널조사
반려동물 양육비율 (가구수)	15% (312.9만 가구)	27.7% (638.1만 가구)	29.7%	23.7%	23.9%	27.9%
개	11.6%	22.6%	23.9%	16.2%	16.0%	22.6%
고양이	3.4%	7.9%	7.6%	7.2%	6.9%	5.6%

자료: 한국반려동물신문(2022.4.18.), “반려동물 관련 통계, 그 한계와 고민”. (검색일: 2023. 1. 7).

- 이와 관련하여 '22년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외의 경우에는 약 절반 정도의 가구(54%)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

- 가구 구조의 변화와 개인 간 의사소통 수단의 다양화,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 및 역할 재인식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개인들의 감정적 관계 유지 및 확대 등과 관련되어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특히 2020년부터 본격화된 팬데믹 상황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반려동물 관련 세계시장은 전년도인 2019년 대비 약 6.9% 정도 성장한 1,421억 달러로 추산되었음(매일일보, 2023)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 반려동물 사업과 관련된 시장은 약 3조 4,000억 원으로 지난 6년간 한해 평균 7.8%의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음(박가현, 2022)
  - 각 조사시기나 국가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세계 국가별 반려동물 양육률 가구별 조사에서도 한국은 약 26%로 제시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약 67%,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약 62%, 영국은 44% 정도로 제시되고 있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관련 제도 및 산업, 활동 등 관련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음.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높은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절반 이하의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어 아직은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비율이 낮은 편이나 산업적인 면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III-1] 주요국 가구별 반려동물 양육률



자료: APPA, Asia Pet Alliance(2020).

- 2016년 GFK 조사에 따르면 22개국 27,0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아래 [그림 III-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멕시코와 미국(각각 64%, 50%), 아르헨티나(66%), 브라질(58%), 폴란드(45%) 등과 같이 전체 가구대비 반려동물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주로 북부 및 남부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 양육비율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료나 반려동물 관련 용품 등 직접적으로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성이 높은 ‘반려동물 특화’ 제품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남아메리카 및 유럽 주요국 등 상대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사료의 종류나 다양성, 동물성 사료의 재료, 경향 등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비율이 높지 않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률과 더불어 각 산업의 다양성 및 해외국가들의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현황 및 특성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I-2] 22개국 반려동물 양육률



자료: GFK 22개국 조사(2016).



## 2) 펫휴머니제이션의 대두와 논의의 확대

□ 반려동물의 양육 수 및 가구 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인 가구의 증가와 반려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의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

○ 특히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펫휴머니제이션(Pet Humanisation)’에 대한 관심 고조와 이와 관련된 인식의 변화, 관련 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과 확대 등이 주목받고 있음

○ 과거에는 주로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흥 및 여가시간 등과 관련된 활동으로 반려동물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 확대 및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변화 등의 영향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 또는 친구와 같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며, 반려동물을 인간화하는 경향이 대두되며, 이러한 현상을 펫휴머니제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즉 펫휴머니제이션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 또는 친구로서 인식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반려동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소비 방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으며, 관련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며, 반려동물의 생명권을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적용함. 따라서 반려동물의 일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 지난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도 세계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약 1,392달러에 달하였음. 특히 미국이 전체 반려동물 시장의 약 4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9% 정도로 나타남. 브라질 (4.5%), 프랑스(4.2%), 영국(4.6%)의 국가들의 비중이 컸음

-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5.4%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장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임

[그림 III-3] 세계 반려동물 관련 산업 매출액(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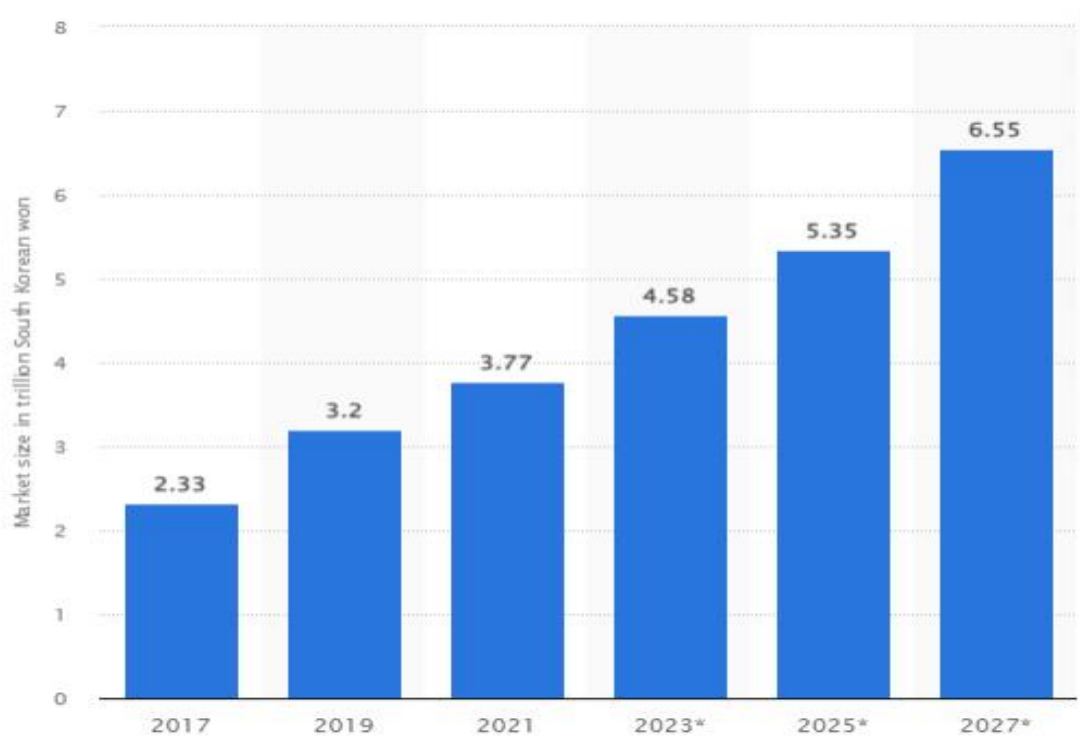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2021).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구별 활동의 축소 및 사회활동 감소, 개인별 의사소통 제한 등은 반려동물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 범위의 확장 및 꾸준한 규모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짐
-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년 8천억~1조 정도의 관련 사업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림 III-4] 한국 반려동물 관련 사업 규모 및 예측

(단위 : 조)



자료: Statista(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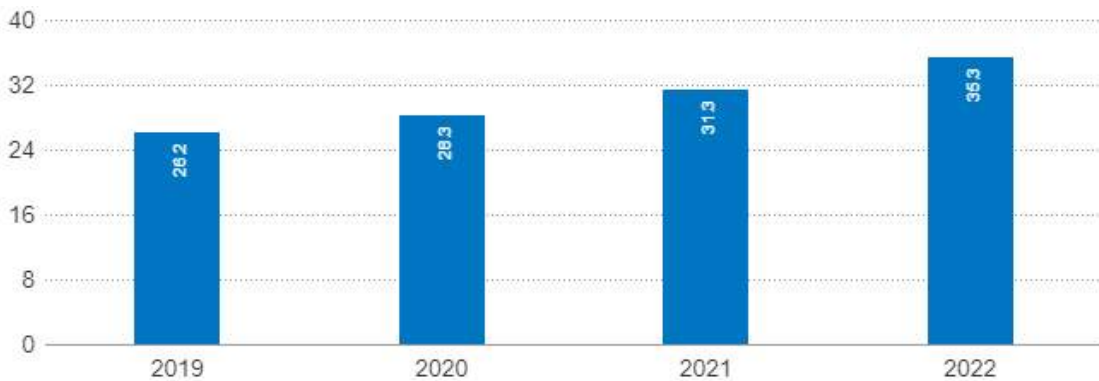
- 코로나 19 이후 각 개인별 접촉 및 사회적 활동들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전세계 60여 개국의 반려동물 개체 수는 2026년에는 약 19억 마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한국반려동물신문, 2022)
- 따라서 이러한 양육 수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27년 전체 약 3,500억 달러로 연 6.1%의 고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됨
  - 특히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및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든 미국과 유럽시장의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 및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등 반려동물 신흥국의 미래진행형 상황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즉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구조에 대한 사항이며,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비롯한 펫푸드 산업의 수출입 시장에서도 독일과 미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점유율 또한 상위 8개국인 북미 또는 유럽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영국의 경우 전체 가구 중 약 60% 정도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반려견과 반려묘가 약 7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2020년을 기준으로 반려동물 사료, 즉 펫푸드와 관련된 산업은 약 29억 파운드이며, 반려동물 의료시장은 21억 파운드, 미용 및 관련 산업은 약 9억 파운드 정도로서 각각 4조와 3조, 1조를 상회하는 시장가치를 나타냄
- 이에 따라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높은 시장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됨. 또한 2022년 기준 영국의 가구당 반려동물 양육비율은 전년대비 약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려견이 약 1,300만 마리, 반려묘가 약 1200만 마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반려동물신문, 2022)
- 영국 반려동물 식품 (펫푸드) 관련 제조협회인 PFMA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간의 조사결과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제품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기간동안 약 3백 만마리 이상의 반려동물들이 새로 양육되면서 관련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음. 시장가치는 영국의 경우 약 11억 4,000만 파운드 (약 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독일의 경우 전체 가구 수 대비 약 60%의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된 양육자의 연령대는 50% 이상이 60대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한국반려동물신문, 2022)
- 또한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독일 반려동물 산업 관련 시장은 주로 스마트 IT 관련 산업과 악세서리 등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연관산업이며, 특히 양육의 편의성 및 반려동물 건강과 연계된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수요는 주로 사료 및 건강관련 보조식품 등과 연계성이 높으며, 특히 반려견의 경우 다양한 세부 품종의 특성 및 연령, 양육환경 및 각 개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반려동물 개별 단위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반려동물 양육개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사료 및 식품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온라인을 통한 반려동물 제품 구입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아마존이나 주플러스와 같은 거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관련 제품 구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반려동물 사료 및 식품시장은 이탈리아에서 성장률이 가장 큰 분야로서 매년 약 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관리 및 위생 등과 관련된 제품 또한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 (약 25억 유로, 3조 1800억 원)
- 향후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주요 관심 분야 또한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의 제조 및 운영상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한 원료 사용, 포장 등 최근 제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 원칙을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도 동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늘어가고 있음
  - 이와 같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 특히 사료 및 식품,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품 등의 품질 및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반영 등과 관련된 사항은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높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 기준 약 50억 유로(6조 7천억 원)의 시장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 특히 프랑스의 경우 채식주의 및 자연주의, 글루텐 프리 등 일반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과 유사하게 반려동물 사료 및 식품의 다양성 및 자연식품 사용 등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반려동물 식품과 관련된 전문분석기관인 Vitagora의 조사에서도 프랑스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 및 식품의 선택시 원재료 및 함량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응답자의 약 84%) 조사되었으며, 자연재료에 대한 선호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함
- 펫휴머니제이션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되어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하여 보다 고품질의, 프리미엄급 제품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된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경제 및 사회활동과 관련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성장둔화세에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지출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구체적인 지출에 대한 파악 및 분석 등이 주기적으로 조사되거나 발표되지는 않으나 카드회사 등 개인 소비지출 경향에 대한 분석 등 민간기업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9년이나 2020년에도 반려동물 관련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였음

-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도 지속되어 '22년 1인당 반려동물 지출액은 카드 기준으로 약 35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연간 카드지출액 증가정도 및 방향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높던 2019년 및 2020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2022년 또한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음

[그림 III-5] 반려동물 연간 카드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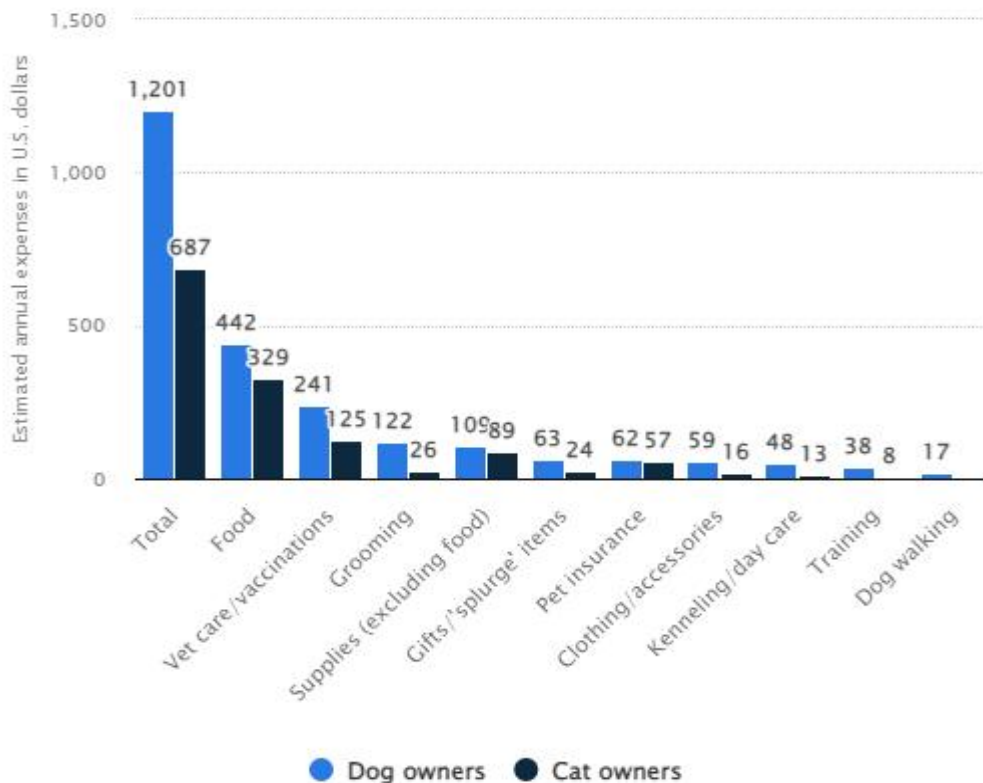


자료: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2023).

- 비록 반려동물과 관련된 특정 카드 지출액과 관련된 정보라는 한계는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컸던 시기를 포함하여 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인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관련 사업의 다양성 및 고품질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고부가가치 및 다품종화에 대한 산업적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조사 및 분석상 한계가 있으나 전세계에서 가장 반려동물 양육비율 및 관련 사업 매출이 가장 큰 미국시장의 경우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지출을 중심으로 세부항목에 대하여 분류 시 1년의 약 1,201\$(약 161만 원) 을 지출(반려견의 경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간 카드 항목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및 용품의 세분화 및 다양성이 큰 해외에서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직접 구입하는 소위 직구 판매량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증가 및 관련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음
  - 해외주요 항목은 사료, 예방접종, 미용, 관련용품, 보험, 약세사리, 돌봄 등으로 세분화됨. 상대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이 활성화된 미국 반려동물 지출로 판단할 때 향후 반려동물과 관련된 주요 지출인 사료와 위생 관련 케어, 미용 및 약세서리 용품, 보험 등의 관련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각 항목별로 산업발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 규제에 대한 분석, 반려동물 관련 산업 확대를 위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양육 및 관련 사업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미국의 산업 관련 사업에서는 주로 반려동물 사료 및 식품, 의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 판매 및 장묘 등 일상 관련 서비스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그림 III-6] 미국 반려동물 양육관련 지출 현황: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자료: Statista(2023).

## □ 반려동물 산업 관련 주요 정책 여건 및 범위

- 반려동물 관련 산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 및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산업의 고품질화 및 다양성,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의 역할 및 관련 규제에 대한 분석, 확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반려동물의 범위와 주요 논의, 산업 확대 및 다양성 보장 등을 위한 관련 산업의 범위는 법적인 고려사항과 기타 정책운영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산업상 분류 내에서 규정되어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함
- 현재 표준산업분류 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연관산업으로 생산업과 판매업, 수입업과 장묘업, 미용업, 운송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료제조판매업과 수의업 등으로 구별되어 있음(전승훈 외, 2021)
-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발전의 주요 대상산업은 현재 표준산업분류상으로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상 관련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산업이 정책적 적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반려동물 산업의 대상은 주로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된 산업(펫푸드), 반려동물 보호 및 안전 등과 관련된 산업(의약품, 보험, 위탁관리, 장묘 등), 반려동물 사육 및 중개 등과 관련된 산업(사육, 도·소매 등), 반려동물 일상과 관련된 산업(미용, 수의, 용품제조 및 판매 등) 등으로 구별할 수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세부산업은 최근 들어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동물보호와 관련되어 정책적 운영 방향에서 각기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즉,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주로 가축 및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적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2.6.18시행)의 주요 사항들은 「동물보호법」의 위임행정규칙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의 모범으로서 행정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동물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주로 규제행위 및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즉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기준으로 「동물보호법」 내 반려동물 사항은 전체 동물에 대한 사항을 준용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특성 및 세부기준에 대한 해석기준으로서 작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세부항목 또한 주로 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중심으로 함에 따라 시설규제 및 행위규제와 같은 준수조항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마련된 「동물보호법」의 사항들을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정책적 기본사항들과 연계시키기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사항 들은 모법인 「동물보호법」의 사항들을 고려 하되 반려동물에 대한 의무 및 준수사항들은 주로 기존 「동물보호법」의 규정사항들에 대한 실효성 강화 및 관련 정책 확대 등의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2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필요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소위 ‘동물복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주로 고려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학대나 대민 위해가능성이 있는 일반견 및 맹견 등에 대한 관리 및 허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및 동물인수 등 주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정책적 사항 등을 위주로 제도 및 관련 정책이 마련됨
- 이에 비하여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고려는 아직 검토 중이며, 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련 정책의 강화 및 실효성 증진을 중심으로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진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사회적 인식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반려동물 양육가구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의 경우 반려동물 및 동물 복지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여건 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 및 다양성, 타 산업과의 연계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음
- 즉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의 법적인 지위나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특히 민법에서 물건으로 정하여 있기 때문에 반려 동물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손해 발생으로 개인 간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손해배상 등의 처리상 한계가 나타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외부환경의 변화와 정책수요 등이 더욱 증가 및 다양화 되어 법체계 내에서 개별 분야별로 관련 정책의 필요성 및 제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기 전에는 기존 산업의 유형과 형태, 내용 등을 기반으로 산업발전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전체 가구수의 절반 이상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미국의 산업 유형분류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사업 유형은 반려동물 관리업과 미용업, 훈련업, 위탁관리업 및 장례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와 연관된 산업을 중심으로 시장수요 및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III-17] 미국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유형

유형		내용
반려동물 관리 관련 사업	미용, 훈련, 보호, 장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용, 훈련, 숙박, 장례 등 관련 산업</li> <li>- 반려동물 생산 및 의료, 마취를 동반하는 미용 등은 미포함</li> </ul> </li> </ul>
	기타 반려동물 관리 관련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용, 훈련, 숙박, 장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외한 반려동물 대상 비의료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대상: 반려동물 산책, 보호, 식별표시 제공서비스 등</li> <li>- 보험 등 반려동물 안전 및 관리 등 관련 서비스</li> </ul> </li> </ul>
반려동물 미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 외관 및 위생 등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함: 반려동물의 외관에 대한 미용 관련 산업 (제모, 세척, 손질 등)</li> <li>- 미포함: 마취가 동반되어야 하는 반려동물 외관 관련 사항</li> </ul> </li> </ul>
훈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동물과 양육자 간의 지시 및 행동교정 등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복종 관련 훈련 및 특수역할 (경비견, 안내견 등)에 대한 사항</li> </ul> </li> </ul>
위탁관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 및 음식을 제공하며, 운동 등 반려동물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하루 이상 위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학적인 치료 등을 위한 관리는 제외</li> </ul> </li> </ul>
반려동물 장례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은 반려동물을 사람의 사망 시 절차와 유사하게 관리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례 절차 및 진행, 반려동물 사체 관리 및 처리</li> </ul> </li> </ul>

자료: 김현희(2017). 저자 참고 수정.

-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경제적 영향력은 2015년 기준 직간접인 경제 유발효과가 약 6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유급 일자리는 약 130만 개의 이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김현희, 2017)
-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은 반려동물 관련 식품과 미용, 위탁 및 장례업 등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로 식품 및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미용 및 훈련, 위탁, 장례 등 반려동물 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지출 및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동물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보호 및 안전, 미용과 관리 등의 산업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정책적 적절성이 높다고 판단됨
- 또한 반려동물을 애완동물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고려하는 인식변화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관련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기존 산업 분류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반려동물 식품(펫푸드) 관련 산업과 미용 및 관리와 관련된 사업, 사육 및 증개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산업 발전가능성 및 시장상황 등에 대하여 논의함. 또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특징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분석 및 제시함

#### □ 반려동물 식품관련 산업 관련 주요 논의점

- 반려동물 식품 관련(펫푸드) 산업의 최근 성장추세로 볼 때 전세계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026년에는 약 2,1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박가현, 2022)
- 주요 세부항목은 주요 반려동물인 반려견과 반려묘 사료가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펫제품이 약 28%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반려동물 사업과 관련된 중요 고려 사업은 주로 사료와 관련된 사업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전세계 펫푸드 관련 산업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09조 정도를 차지하는 산업 규모로 전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70%이 상을 나타내는 반려동물 산업 중 세부 항목으로는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임정빈 외, 2019)
  - 특히 반려견과 반려묘의 경우 약 65조 및 39조의 산업규모를 나타냄에 따라 전체 95.7%의 규모로서 대부분의 펫푸드 관련 산업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펫푸드 관련 산업의 주요 대상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 한다고 파악할 수 있음
- 펫푸드 관련 산업은 주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나, 최근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 비율이 낮았던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 지역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와 구매력 상승 등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I-7] 반려동물 사업 제품 국가별 교역 현황

2020년 펫푸드 제품 국가별 수출액				2020년 펫푸드 제품 국가별 수입액			
(백만 달러,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전세계		17,224	100.0	전세계		17,087	100.0
1	독일	2,213	12.8	1	독일	1,685	9.9
2	미국	1,725	10.0	2	미국	1,232	7.2
3	태국	1,658	9.6	3	영국	1,014	5.9
4	프랑스	1,657	9.6	4	폴란드	982	5.7
5	폴란드	1,306	7.6	5	캐나다	897	5.3
6	네덜란드	1,279	7.4	6	프랑스	893	5.2
7	중국	984	5.7	7	이태리	720	4.2
8	캐나다	753	4.4	8	네덜란드	695	4.1
9	헝가리	603	3.5	9	일본	673	3.9
10	체코	552	3.2	10	중국	621	3.6

자료: 이현순(2021).

- 제시된 [그림 III-7]에서 나타나 있듯이 반려동물 관련 펫푸드 산업 수출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스나 네슬레와 같이 글로벌 사료기업의 현지생산공장이 위치한 태국 등이 반려동물 사료 수출과 관련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펫푸드 관련 주요 반려동물인 반려견과 반려묘 개체수는 각각 598만 마리와 258만 마리로 추정되었으며, 코로나 19시기 반려동물 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반려견의 경우 약 650만 마리, 반려묘의 경우 약 330만 마리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약 1,000만 마리 정도의 반려동물 소비시장으로 추산됨에 따라 산업적인 발전가능성 및 구매력 기준 시장으로서 가치 판단 또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펫푸드 관련 소매시장 기준 95% 이상이 반려견과 반려묘 식품으로 구성됨에 따라 전체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사실상 반려견과 반려묘 관련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반려동물 사료는 1% 수준으로 낮은 편임(임정빈 외, 2020)
- 따라서 펫푸드 관련 산업 및 시장에서 고려할 점은 반려견과 반려묘 사료와 관련하여 시장동향 및 소비자 수요와 경향, 수출가능성 및 이와 관련된 정책적 제도적 측면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양육률 및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반려견과 반려묘 관련 사료시장의 경우 전체 관련 시장의 대부분(99%)을 차지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형태 등을 고려할 때에도 주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사료 및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음
  - 국내 반려동물 사업도 주로 반려견과 반려묘 사료와 관련된 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 2020년 기준으로 약 8,000억 원과 5,100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고려할 점은 기타 다른 반려동물들의 사료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약 96억 원 정도로서 현재 반려동물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관련 시장의 경우 반려견이 약 60%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8] 국내 반려동물 사료사업 규모



자료: 데일리 팝(2022).

- 최근 들어 반려동물 사료 관련 사업은 해외 브랜드가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업체가 가시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기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 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경우 지난 20여 년 동안 마스나 네슬레 등 다국적 식품 기업을 중심으로 사료 및 간식 등 반려동물 식품 관련 시장의 점유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풀무원, 동원에프엔비 등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반려동물 사료 관련 사업에 진출하여 점진적으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다양한 기호 및 영양성분, 기능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면역력 및 영양상태를 고려한 다양한 사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으며, 배송 및 포장, 전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고려와 제도 정비에 대한 요청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사료관리법」은 1963년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안으로 주로 사료의 수급, 가격,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조단백이나 칼슘, 인 등의 등록성분에 대한 정보를 백분율로 표시하며, 사료의 용도에 대하여 표기함
- 하지만 국내 「사료관리법」에는 반려동물의 상태나 유의점, 고려사항 등 권장 영양 규정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 등은 표시되지 않으며, 일부 반려동물 사료 업체들의 수출 관련 해외 규정에 대한 자발적 표기 등이 제시되고 있는 사항임
-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는 축산동물용 사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가축을 포함한 전체 축산업 및 동물 대상 사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즉 반려동물의 경우 가정 내에서 사람과 같이 생활함에 따라 양육하는 사람의 거주환경과 보건, 위생 및 안전의 측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사료 관리협회(AAFCO)의 경우는 반려동물을 성장 및 수유기와 성숙기로 나누어 판단함(국민일보, 2022). 이에 따라 필수 아미노산 및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을 기준으로 최소 함량을 제시, 사용자에게 필수 정보로 제공 및 반려동물에 대한 충족을 권고함
  - 반려동물에 사용되는 사료에 대하여 유럽 반려동물 사료연방(FEDIAF)의 경우에는 활동성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에 따른 분류와 성장기 분류기준인 14주를 기본으로 성장기와 성숙기로 분류하는 등 영양소 흡수 정도를 고려하여 미국보다 자세한 기준으로 반려동물 사료 구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
  - 또한 미국 사료 관리협회와 유럽 반려동물 사료연방의 권장 영양소 필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완전식품 또는 펫푸드 표시가 가능하며, 소비자들에게 사료 선택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됨
-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과 같이 관리되고 있으며, 사료성분 및 첨가제에 대한 주관기관 또한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관리청(FDA)에서 담당함

- 식품의약품관리청(FDA)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 사료에 대한 성분과 첨가제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며, 관리협회(AAFCO)는 식품의약품관리청 (FDA)과 업무상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동물 사료의 성분 및 정보, 안전여부 등을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확인함. FDA는 이에 대한 과학적 확인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지원함.
- 따라서 AAFCO는 비록 각 주정부의 동물 사료 관련 담당 공무원 및 FDA 관련 공무원, 수의사 및 동물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되어 자문기관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등 FDA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함(한국수의영양학회, 2021)
- 다시 말해, AAFCO는 비록 행정적인 권한을 가진 제도적 역할 수행상 한계는 있으나 동물 사료와 관련된 정책적, 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논의 등을 통하여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함
- 특히 세부적인 사항에서 다양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들을 사전적으로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된 프로세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AAFCO는 1909년 창립되어 100여년이 넘는 운영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모든 주정부와 캐나다, 코스타리카 및 푸에르토리코 등이 포함되어 있음. 동물사료 제조에 대한 법안제정 관련 정보 및 사료정보에 대한 사항을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반려동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및 반려묘를 중심으로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표시기준을 마련 및 제시함
  - 2006년에는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최소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필수 영양소 및 함량, 표기기준 등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음
- AAFCO의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공식적,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됨에 따라 반려동물 건강에 대영양학적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원용됨
- 따라서 AAFCO의 가이드라인은 하나의 검증 절차 기준으로 소위 “완전하고 균형잡힌” 영양기준으로서 소비자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며, 성분 또한 식품 첨가물 규정을 준수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수용됨



- 유럽의 경우 FEDIAF의 자체규정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며, 이는 반려동물의 사료에 대한 영양 가이드라인 및 사료 제조 시 안정성에 대한 best practice를 제시하고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시 관련 지침 등으로 구성됨
- 해당 영양 가이드라인은 영양학적 적절성을 얼마나 충족하였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소비자들에게 활용됨. 즉 영양학적 성분의 충족 정도에 따라 “완전사료”와 “불완전사료”로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 구입 시 사료의 영양학적 적절성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함
- 호주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인 PFIAA가 1970년대부터 설립되어 제조기준과 포장기준, 안전성 및 영양소 관련 요구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호주 반려동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호주 PFIAA는 미국의 AAFCO와 유럽의 FEDIAF의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며, 「사료관리법」은 1963년 제정되어 주로 사료의 수급 안정과 품질관리 및 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사료 제조와 관련된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 및 주로 산업동물을 위한 배합사료의 생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됨. 또한 사료의 품질관리 또한 사료의 기준 및 규격 HACCP 등 전반적인 사료 제조 시 안전관리 체계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주로 안전을 중심으로 구성됨
  - 관련 시행세칙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내에는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의 범위 및 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의 범위와 사료 성분등록, 유해범위, 사용가능한 동물용 의약품, 사료 사용 제한물질, 사료용 벧죠티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사료 표준분석방법 등 전반적으로 산업용 동물 사료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단미사료의 경우에도 식물성과 광물성, 기타, 혼합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기준에서는 애완용으로 명시)의 간식용, 영양보충용은 보조사료(보존제 및 향미제에 한함)를 첨가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등 전반적인 대분류 내 사료성분에 대한 명시적 포함 기준만을 제시함
  - 또한 사료 내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양축용 고기소 배합 사료와 양축용 젖소 배합사료, 양축용 돼지 배합사료, 양축용 닭 배합사료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대상 의약품에 대하여 허용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의약품 또한 산업용 동물을 중심으로 주로 식품안전과 연계되어 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사료관리법」의 규정은 주로 산업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의 종과 사용범위 및 용도에 대한 구분 및 식품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품질 보장을 위하여 사료의 제조, 사용, 보존방법 및 동물성 의약품 검출 기준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즉 반려동물의 경우 개체의 건강상태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영양학적 성분 제시 및 포함정도, 사료별 적정 소비 등의 사항들을 제시,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사료의 기능 및 효과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연령 및 건강상황, 필요성 등을 고려한 사료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반려동물 보험 등과 관련된 산업

-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 및 시장은 연간 약 10% 정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및 관련 서비스가 모두 늘어나고 있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와 성장세와 반려동물의 개체수 증가 및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제품 소비 등의 관련 요인들을 고려할 경우 서비스 분야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성장가능성에 비하여 아직 반려동물 보험시장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음

- '22년 기준 반려동물 원수보험료(보험회사가 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약 287억 정도로 전체 손해보험의 약 0.024% 수준에 그침(김경선, 2023)

[표 III-18] 반려동물보험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억 원, %)

유형	원수보험료		
	' 20년	' 21년	' 22년
상위 1개사	124.5 (80.9)	173.5 (81.3)	225.1 (78.3)
상위 5개사	144.4 (93.8)	210.5 (98.7)	280.5 (97.6)
전체	153.9 (100.0)	213.3 (100.0)	287.5 (100.0)

자료: 김경선(2023).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실제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양육 중인 반려동물 연령대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려동물 보험과 관련된 주요 논의는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실제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하여 의료비 비중이 약 35%로 추정되며,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짐
  - 반려동물 양육에 대하여 의료비 지출에 대한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우려는 높은 편이며(약 35%), 반려동물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질병에 대한 고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경기연구원, 2015)
-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 등을 통하여 의료비 및 각종 의학적 관리사항에 대하여 대비하는 반려동물 양육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2007년말 처음으로 출시된 반려동물 관련 건강보험 또한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출시하였으나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은 판매를 중단함

- 즉 반려동물보험은 보험료 산출 및 추산에 한계가 있었으며, 협의요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가입을 등에 영향을 받아 운영상 한계를 노출함
- 이후 2014년 동물 등록제 의무화에 따라 관련 반려동물보험이 재출시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사(3개사)에 의하여 출시되었으며, 2017년 3월 기준 약 2,000여 건의 계약 실적을 보임에 따라 전체 반려동물 예상규모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통상 반려동물보험은 질병상해보상으로 치료비의 70%를 보상하거나, 입원비 및 수술비, 통원비 등을 보장하고 있음
- 반려동물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고유개체에 대한 식별상 한계와 청구심사 시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관련 데이터 등의 확인이 어려움
- 또한 진료청구 시 확인 및 의심사항에 대한 재검토 등 청구 관련 사항에 대한 프로세스상의 확인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설계가 요청됨
- 반려동물보험 판매 시에도 대인보험과 동일한 설계 자격증이 필요하며, 대면 의무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중 홍보물 심의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대인보험에 비하여 상해보상 내용 및 기타 관련 내용에 대한 고려사항이 적은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보험은 대인 의료보험 및 상해보상보험보다 보험금 청구가 높은 편으로 소형 또한 신규진입 보험사의 경우 손해사정 관련 인력 부족 및 보험수지 악화 등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반려동물 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안전할증이나 위험율 조정, 사고량에 따른 할인 또는 할증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주로 입원 및 수술비 등 질병 관련 비용에 대한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에 따라 표준상병코드에 대한 고려 및 동일 질병에 대한 병원 간 진료비 편차 등의 조사 및 확인 등이 필요하며, 반려동물 보험료 책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수집 및 확인 등을 총괄하는 제도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지난 ‘21년 금융위원회의 제도 도입에 따라 실시된 소액단기보험사 제도의 경우 반려동물이나 여행 및 레저, 스마트폰 등 일상영역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비를 위하여 보험사 설립과 관련된 최소 자본금을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함
- 그러나 소액단기보험사는 보험기간 1년의 상품을 연간 총수입보험료 500억 한도로만 판매가능하기 때문에 활성화의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건강 데이터 및 진료비 관련 샘플 정보, 주요 병원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참조요율을 개발, 활용가능하도록 데이터 활용 및 스크리닝 등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반려동물 의약품 제조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

-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각종 성분 및 잔류물질에 대한 허용 기준치에 대한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산업동물을 대상으로 도축 시 잔류물질이 유통과정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때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연관관계를 가짐에 따라 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다루어졌음
- 따라서 2020년 기준 약 200여 종의 의약품에 대한 잔류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준치 설정은 주로 안전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살충제를 비롯한 유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성분에 대한 안전과 잔류물질에 대한 조항은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2017년에 제기된 살충제 달걀 파동 등 동물의약품과 식품안전의 연계성 높은 성분 등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법안 및 시행세칙 등이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음
-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펫휴머니케이션 등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반려동물의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및 산업관련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즉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후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성이 높은 노년 세대의 유입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은퇴인구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의 증가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전세계 동물 관련 의약품 산업 및 시장은 2023년 약 62조 규모로 추산되나 2030년에는 약 108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약 10% 이상의 상승세로 1,538억 원 정도로 시장규모가 추산되고 있음. 또한 의약품과 의료기기까지 포함할 경우 약 1조 3400억 원 가량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물 관련 의약품에 대한 수요 및 성장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아래 [그림 III-9]에서 나타나듯이 시장규모는 지난 2015~2020까지 약 20% 이상 성장하였으며, 내수시장 또한 15%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완제품 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입품 비중이 비교적 큰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 III-9] 국내동물용 의약품 시장현황



자료: 피그엔포크한돈(2021).

-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은 전체 동물의약품 시장 중 약 17%를 차지하며 비중은 아직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시장으로 수입액의 경우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70% 이상의 비중을 수입의약품이 차지하고 있음

[표 III-19]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현황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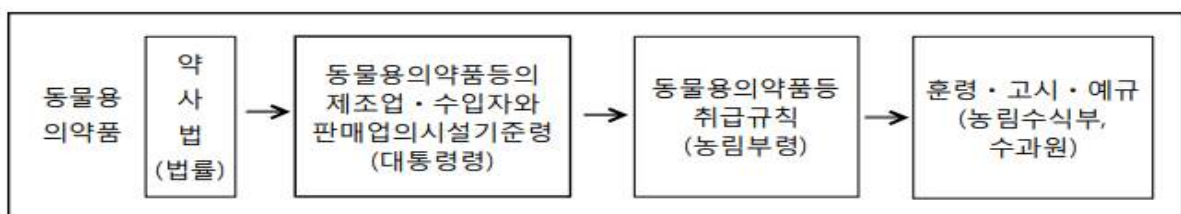
유형	' 19년	' 20년	' 21년
국내시장(A+C) (전년대비 증가율)	1,028	1,286 (25%)	1,538 (19.6%)
생산(A+B)	562	650	837
국내 공급(A)	248	324	402
수출액(B)	314	326	435
수입액(C)	780	962	1,136
수입 비중	75.9%	74.8%	73.9%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 中 반려동물용 비중	12%	14.7%	16.7%
국내 동물의약품 생산 中 반려동물용 비중	6.7%	7.7%	8.9%

자료: 국무조정실(2023). “규제심판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 허용해야” .

- 상기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반려동물 시장 중 수입비중이 70%를 상회하며, 특히 다국적제약사인 MSD나 베링거인겔하임 등 회사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북미 및 유럽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기반으로 동물의약품 관련 사업부를 전담으로 운영하며 반려동물 관련 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동물용 의약품 관련 법률은 「약사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물용으로만 사용이 규정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하여 ‘처방대상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 약 40개 정도의 행정규칙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의약품 검사 및 심사 등의 집행 절차와 관련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고시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동물용의약품의 식품 내 잔류에 대한 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 기준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주관부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지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부처는 관련 절차의 과정 및 내용, 대상 등에 따라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동물용의약품과 식품과의 연계성을 법적인 책임성의 기본 전제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음(김나영, 2018)
  - 즉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 및 관리에 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약사법」을 근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중 동물용의약품 안전 관리 및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용 중 축산을 대상으로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행정집행상 실질적으로 축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실질적 관리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음
  - 동물용 중 수산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며, 국립수산물과학원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련 실질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즉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모법으로 작용하는 「약사법」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동물용으로만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산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림 III-10] 한국 동물용 의약품 관련 법령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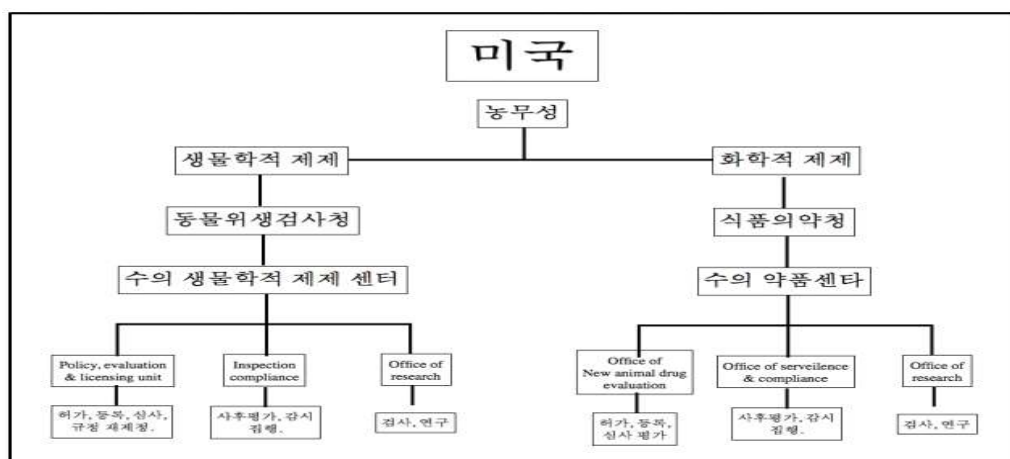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물부(2010).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근 (23.3.3 기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는 일단 제약회사의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에 대하여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 현재 「약사법 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0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17,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체용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별도 동물용 제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의 경우 주로 의약품 제조, 생산과 유통에 대하여 안전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음
  - 즉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및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의 허가신청 절차에는에서의 시험시설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내용 조건 조항은 약사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업 허가를 준용함. 따라서 「약사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사항을 원용할 경우 규제심판부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인체용과 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된 성분 중 22개 성분에 대하여 인체용으로 생산이 허가된 제조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동물용 의약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관련 시장은 제품의 용도에 따라 약제와 백신, 약용 사료 첨가제 등으로 분류됨(Innopolis, 2021)
  - 과거 동물 의약품 시장 성장은 주로 동물 간 전염률이 높은 조류, 돼지 인플루엔자 등의 창궐과 첨단 의약품 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 및 신생 스타트업기업의 증가 등과 관련됨. 특히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 및 반려동물, 양봉용, 양잠용, 수산용 동물 등 다양한 동물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영향을 주고 있음
-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과 관련된 법규들은 각국의 법체계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동물성 의약품은 농업 관련 법규 내의 식품과 약품에 대한 규정인 Title 21에서 규정하며 이는 115개의 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Title 21의 9장에서는 연방정부의 관리대상인 식품과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의료기기를 모두 규정하고 있음

- 또한 19장 및 26장에서는 살충제 및 식품안전에 대하여 규정하며 구체적인 잔류 분석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음. 즉 미국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식품, 의약품, 화장품은 모두 총괄하여 다루며, 금지행위 및 관련 처벌조항, 식품 및 의약품, 화장품 등 해당 법률에 대한 적용범위, 권한 등 한국의 의약품 관련 주요 법안인 「약사법」 보다 세밀하며 구체적인 법적근거로서 작용함(이규하, 2020)
  - 미국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조직 체계는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하는 농무성을 중심으로 생물학적인 제제와 화학적 제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물학적 제제와 화학적 제제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조직 운영 방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미국의 경우 동물위생검사청과 식품의약청이 생물학적 제제와 수의 약품의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동물용 의약품 인허가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고 승인하며, 사용방법 및 잔류기준 등 의약품과 관련된 물리적인 사항 등은 식품의약청이 담당하며, 동물과 관련된 개체별 검사 및 관련 사항 등은 동물위생검사청에서 관리함
  - 따라서 이러한 프로세스상의 구분을 통한 관리상의 용이성 및 프로세스상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동물성 의약품의 사용기준 및 잔류모니터링, 사용이나 실태 확인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괄하며, 샘플링을 통한 의약품의 물리적 성분 및 안전 기준 등의 확인 등은 식품안전처에서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I-11] 미국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조직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0).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 2.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제개혁 방안

### □ 반려동물 산업 관련 규제관련 주요 고려점 및 혁신방안

#### ○ 반려동물 산업 관련 규제 주요 내용 및 고려점

-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주로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규제와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규제 등과 관련됨
- 즉 반려동물 식품과 관련된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된 규제, 반려동물 건강 및 관리 등과 관련된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규제, 반려동물 의약품과 관련된 규제 등과 관련됨

#### ○ 반려동물 사료 및 식품 관련 규제혁신방안

- 반려동물 즉석식품 규제특례와 같이 반려동물 중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 하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대상으로 현재 적용 중인 「사료관리법」 적용을 유예 하며, 반려동물(주로 반려견 및 반려묘를 대상)에 대한 사료 및 관련 표시기준을 확대하고 실제 반려동물 사료 및 식품의 소비자인 양육자의 수요에 맞춰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현재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된 표시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된 총괄기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며 미국 AAFCO와 같이 반려동물별로 권고 영양성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샘플 실험 및 위험성 실험, 성분 확인 등 실험을 통한 과학적인 확인이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마련, 확인하는 것이 적절함
- 즉 반려동물 사료 및 식품 등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및 제품 등과 같은 환경적 조건에서 소비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성분이나 용법 등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과 거의 유사한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며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성분 표기 등과 관련된 사항 또한 기존 동물사료에 대한 총괄법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사료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사료관리법」에 적용대상인 반려동물 사료의 경우 규제특례 등을 통하여 안정성 및 필요성, 유통상 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적용사항을 재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짐

- 또한 미국의 AAFCO와 같은 반려동물 사료 관련 협의체 기관을 총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마련, 관련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행정적으로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는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세부적인 규제사항 확인 및 신규 고려사항,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정책적, 제도적 이슈에 대한 일차적인 논의 등의 사항들이 얼마나 적절히 논의되는지 여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들을 사전적으로 얼마나 모니터링하는 지 여부와 관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제를 사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제도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 「사료관리법」에서 동물안전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행정적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거버넌스에는 반려동물 영양과 관련된 학계와 관련 제조업체, 실험 및 조사 등에 대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증거기반의 권고사항을 결정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해당 거버넌스는 반려동물 사료 유통 관련 단체 및 판매 관련 단체, 반려동물 양육자 단체 등이 주요 자문그룹으로 참여하여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외부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 반려동물 보험 관련 규제혁신방안

- 현재 반려동물 보험 관련 이슈 중 보험산업의 특성상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명확성 및 수가편차에 대한 보정, 전문인력 및 계약관련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됨
- 즉 보험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발병율 및 의료행위 관련 통계의 적절성 및 명확성이 높지 않음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수가편차로 인하여 적정한 의료비 추정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대상으로 비중이 높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표준코드의 확립과 동물병원 임상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동물병원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실무자와 실제 적용을 통한 확인 등이 필요함

- 또한 반려동물 보험 관련 실제 데이터를 손해보험업계와의 협업 등을 통하여 분석, 필요 데이터에 대한 확인 및 수집과 관련된 협업 등의 필요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반려동물 관리 및 보험대상에 대한 명확한 파악 및 분석과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비 완화 등 전체적인 반려동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반려동물 간소화 및 등록 프로세스의 간소화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특히 동물 등록에 대한 확인 및 단속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등록을 통한 의료비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한 혜택을 제도적으로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의 각 종별 특성 및 고려점 들의 파악 및 분석을 위하여 질병 코드 통일화 및 사용이 필요하며, 현재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진료행위 자체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리 및 규격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일이 소요됨
- 따라서 현시점에서 처방 및 진료행위에 대한 시범조사 및 분석 등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질병 코드를 도입하여 각 반려동물 종별 상대적으로 의약품 및 진료행위의 빈도수 및 정도 등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치료기간 및 전체 의료관련 비용 등을 점진적으로 추산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영중인 관련 TF를 상용화하여 점진적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마련,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열람 및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

#### ○ 반려동물 의약품 관련 규제혁신방안

- 현재 반려동물 의약품 관련한 동물용의약품의 생물학적 화학적 제제는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적인 세부사항 및 관련 정보, 오남용 및 사용법 등에 대한 법적인 정리 및 축산에 대하여는 관련 동물용의약품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체적인 취급 기준 및 권고사항과 관련 부서 및 업체 등을 총괄하는 협력 거버넌스 기능을 마련, 집행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의 생산 및 통, 취급규칙 및 고려사항 등을 모두 총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 특히 현재 잔류관리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관련 근거 등에 대한 확보 및 모니터링 자료 등에 대한 분석, 제시 또한 정기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인체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인체 동물 공통 의약품에 대한 생산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관련 각 총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절차 진행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 절차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미국과 같이 생물학적 제제와 화학적 제제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에서 절차를 총괄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 및 통계 등을 통합하여 특히 현재 명확한 통계가 없이 사용하는 인체의약품 사용 (Extra-label use)에 대한 총괄기능 및 인체의약품 사용 시 잔류 정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제6절 시사점

### 1. 농식품 및 스마트농업 규제개혁 시사점

- 로봇·인공지능 등 발전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융합되어 국내 농업의 현안문제 극복 및 생산성·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적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음
- 스마트농업은 기존에 농업인의 경험, 지식에 의존했던 농업을 첨단 ICT를 기반으로 지능화되어 생산성 및 부가가치를 높이고 자재와 노동력의 투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스마트농업에 관해서는 스마트팜과 이라고도 불리는데, 스마트팜이라는 용어와 스마트농업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22. 11. 10.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안되었고, 2023. 3. 1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음. 이는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라 할 수 있음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에 관한 지도·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의 도입,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스마트농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라 평가될 수 있음
- 스마트농업은 IT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생산과 유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 법령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직까지도 스마트농업에 관하여 체계적인 육성이나 지원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실제 농업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나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의 발전된 기술에 의하면 기존의 트랙터나 이앙기 등의 농업기계나 온실 자동제어 시설로 기계화가 어려웠던 농작업들에 최신 로봇 기술 등이 적용되어 생산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확·파종 시기, 농약 살포 위치·양 등 기존에 농업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했던 영농활동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무인 자동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 또한 자율주행, 인공위성, 빅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이 상용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스마트농업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농업의 특성을 살려 우리나라에 적합한 육성과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주요 국가·지역별 스마트농업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12)



[표 III-20] 주요 국가·지역별 스마트농업의 특성

국가(지역)	특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적 농업 대기업의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인수, 벤처캐피탈의 투자 등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및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음</li> </ul>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시설 스마트농업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시설·기술 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토지 면적당 생산량을 가지고 있음</li> </ul>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척박한 자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관수·관개(물관리), 스마트 낙농 기술 등이 발달했으며 해당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보유</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기계, 전자 등 다양한 기업의 스마트농업 분야 진출이 활발하며, 스마트농업 기술로 생산된 농작물의 부가가치 부여 사례가 창출되고 있음</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영 기업들의 자본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인수하여 기술력 및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ICT 기업들의 스마트농업 진출도 활발</li> </ul>

-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정부 주도의 육성과 더불어 민간투자도 유도하여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2. 반려동물 산업 규제개혁 시사점

- 1인 가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각 개인의 독립생활에 대한 선호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 또한 전반적인 시장침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연평균 8%의 가까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친밀도 및 유대감 증가에 따라 관련 산업의 고품질 및 다양화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춘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 고려는 아직 진행 중이며, 주로 동물복지와 관련된 수용성 향상 및 동물보호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현재 개정된 동물복지법 또한 주로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측면의 법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추가되었으며, 전반적인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이슈들은 세부산업 부분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따라서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흥책은 아직 초기 단계로 반려동물 산업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반려동물 사료 및 식품에 대한 사항과 안전 및 비용과 관련성이 높은 보험,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연관성이 높은 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반려동물 식품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련 산업 내 비중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관 법률인 「사료관리법」을 중심으로 동물사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특례 사항을 통한 현행 법규사항과 별도의 기준 등의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반려동물 영양성분과 연령 및 종별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영양학 및 질병관리 차원의 접근이 요청됨
- 반려동물 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입률과 보험수가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보험수가 산정과 관련되어 진료비 및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반려동물 의약품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시장규모를 파악하여 관련 법률에 대한 소관 부서 간 조율 및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제조시설에 대한 추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및 지침 등을 재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IV.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규제혁신전략 개선방안

제2절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방안

제3절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제개혁방안



## IV. 결론 및 시사점

### 제1절 규제혁신전략 개선방안

#### 1. 거시적 수단 개선방안

##### □ ‘규제전반의 재구성’의 하향식 전략에서 상향식 전략으로의 전환

- 새 정부 들어서 단행된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은 주로 ‘규제전반의 재구성’ 전략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왔음
  - 특히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애로 해소 등 4개의 규제개혁 추진분야를 ‘선택’ 하여 농·식품 규제개혁 T/F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하여 왔음
- 이와 같이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과제를 ‘규제전반의 재구성’ 전략을 통하여 발굴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하향식(top-down)방식으로 실제 농·식품 현장에서 피 규제자가 가지고 있는 규제개혁의 우선순위가 도외시될 소지가 다분함
  - 2021년 6월부터 대면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하여 분야별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40여 회 개최하는 등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려고 노력하였음
  - 다만, 좀 더 적극적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년간 개선이 되지 않고 건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과제화하고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에 규제개혁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선정부터 해당분야에서 개선하여야 하는 개별규제의 발굴까지 규제개선의 전 과정에서 농·식품분야 현장에서 종사하는 피 규제자가 직접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이를 수렴하여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는 피 규제자들의 개선규제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는 타 경제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에 단행한 상향식 규제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일반화된 규제심사’의 적극적 활용

- 새 정부 들어서 단행된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에서는 일반화된 규제심사의 일부 요소가 반영된 ‘규제심판’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여 왔음. 그러나 규제심판제도는 특정규제에 복수의 정부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해당규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정부 부처 간 갈등을 조정과 타협으로 해소하려는 제도로서 엄격한 의미의 일반화된 규제심사로 보기에 다소 제한된 측면도 적지 않음
- 따라서 일반화된 규제심사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농림부 내의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여 편익(바람직한 사회 또는 경제 질서)보다 비용(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부과)이 과도하게 또는 불필요하게 높은 규제는 개혁논의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농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현 시점에서 ‘일반화된 규제심사’를 변형한 ‘기요틴’을 도입하여 규제개혁과제 발굴의 또 하나의 루트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판단됨

## 2. 미시적 수단 개선방안

### □ 규제절차 개선에 대한 관심 제고

- 새 정부 들어 개최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2022. 9. 14)와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2023. 2. 27) 자료에 의하면, 농·식품 분야에서 단행된 규제개혁 개별사례에서 미시적 수단의 세 유형 중 규제폐지와 규제절차개선에 비해 규제내용개선이 훨씬 더 자주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새 정부 초기 규제개혁이 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규제내용 개선에 다소 편중된 경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향후 농·식품 분야의 규제개혁을 단행할 때에는 규제내용 개선과 마찬가지로 규제절차의 개선도 많이 활용하여 개별규제 개선방안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규제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모든 규제는 애초에 형성될 때 달성코자 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공익)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공익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지 면밀히 검토한 후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규제 외의 대안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 규제내용 개선의 세부적 유형을 살펴보면 규제기준 완화와 규제대상 축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록 소수이지만 규제강도(수준)의 완화를 활용한 사례도 있었음
- 따라서 향후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과정에서 개별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 인지를 고민할 때 명령·통제 위주의 전통적 규제 외에 보다 더 부드럽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피 규제자 스스로 규제를 정하여 이를 준수하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 또는 자율규제를 입법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규제기관과 피 규제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규제를 제정하고 준수하는 공동규제(co-regulation)는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규제 외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전통적 명령·통제 위주의 규제가 아니라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을 제공하여 특정규제가 달성코자 하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며,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그 외 교육 및 훈련, 홍보 및 의사소통, 넛지(nudge) 등을 활용하여 해당 규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다 부드럽게 실현하려는 방안을 다각도로 개발할 필요 있음

## □ 규제절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단 모색

- 농·식품 규제개혁을 위한 미시적 전략 중 규제절차 개선의 세부적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차생략 및 단계축소, 구비서류 감축이 많이 활용되었으며, 아주 드물지만 규제절차 준수를 위한 편의 제공, 의제처리, 유사절차 통합, 규제샌드박스도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과정에서 개별규제를 절차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단위사무의 처리 및 심사기간 단축,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동의, 사후 확인, 동시 절차진행도 고려할 필요 있음

## □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 규제샌드박스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써 스마트팜을 비롯한 스마트농업을 도입해서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식별하고 혁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11건의 사례에 대하여 실증특례 중이며, 이 11건과 별개로 3건의 경우 현재 업체와 협의하여 보완 중임
  - 또한 새 정부 들어서도 2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하였음. 이에 스마트팜을 포함한 스마트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제샌드박스(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제2절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방안

-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스마트농업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스마트팜 혹은 스마트농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어의 정비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22. 11. 10.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안되었음
- 스마트농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내용을 더 구체화 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농업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제화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스마트농업이 실현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스마트농업에 관한 사항은 몇몇 법령에 근거하여 법제화할 수 없고, 다양한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둘 필요도 있음
- 이러한 경우 법령 상호 간에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인 스마트농업이 육성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스마트농업은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을 하는 것이므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빠르고 기술환경의 변화가 많은 분야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별 법령에 대한 검토가 수시로 이루어져서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스마트농업 환경에 적합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농업 관련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변화하는 스마트농업 환경에 맞는 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많은 분야를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될 수 있음
- 따라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규제도 법률에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것임
-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을 규정할 필요도 있음

### 제3절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제개혁방안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경우 양육에 대한 사항은 주로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성이 높음에 따라 기존 규제를 유지 또는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리와 관련된 사료 등 식품과 보험, 의약품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요청됨
- 반려동물 사료 및 식품에 대한 사항은 현재와 같이 관련 사항은 동물에 대한 총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사료 및 식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거버넌스적 운영체도를 통하여 결정하여 제시하며, 이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에 검토 및 반영, 시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짐
- 즉 반려동물 양육자의 지속적인 증가세 및 관심도를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얼마나 관련 이슈들을 사전적으로 파악하는지가 중요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협의체 형식의 제도운영 및 이에 대한 정책적 반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반려동물 보험의 경우 전반적인 보험료 수가 결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수집, 분석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총괄기능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질병코드 통일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며,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검토 및 시범사업 등의 검토 등이 요청됨
- 반려동물 의약품에 대한 사항은 전반적인 제제 사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사용기준 및 잔류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인체의약품 사용과 같이 최근 이슈가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의약품 사용기준 및 권고사항, 관리 기준 등을 마련, 제시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함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국문 문헌]

- 경기연구원(2015).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이슈” .
- 관계부처 합동(2021).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안). 내부자료.  
\_\_\_\_\_ (2018). “스마트팜 확산 방안”. 내부자료.
- 국무조정실(2023). “규제심판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 허용해야” .
- 국회예산정책처(202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p.15~16.
- \_\_\_\_\_ (2020). “12.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 과다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I」. p.143.
- \_\_\_\_\_ (2014). ‘13. 한국마사회 말산업 육성사업 평가’,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352~353.
- 김동연(2014).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한국경제포럼 7(1), 54.
- 김경선(2023).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
- 김나영(2018).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및 위해평가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 김현희(2017).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
- 농림수산식품부(2010).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 농림축산식품부(2023).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농업혁신과 자율·창의 중심의 농식품 규제혁신  
추진방안” . 2023. 2. 27. 내부자료.
- \_\_\_\_\_ (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멈추지 않는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 “. 2023.  
1. 4. 내부자료.
- \_\_\_\_\_ (2022). “제1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농식품 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농식품 규제  
개혁 추진방안” . 2022. 9. 14. 내부자료.
- \_\_\_\_\_ (2020). 「2019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
- 박가현(2022). “성장하는 펫케어 산업 최신트렌드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 한국무역협회.
- 박혁(2019). “축산·구의 분야 분야별 핵심규제 현황과 정책과제” . GS&J Institute.
- 삼정 KPMG(2019). 「스마트농업, 다시 그리는 농업의 가치사슬」 .
-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2023). “반려동물에 ‘1인 평균 35만원’ 카드 끊었다” . 신한카드.
- 이규하(2020).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관리체계” . Bric view 동향리포트.
- 이성환(2016). “규제개혁의 헌법적 검토” . 「한국헌법학회·한국입법정책학회·법제처·한국외대 법학연  
구소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
- 이원우(2008).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 「저스티스」 106, 358.
- 이현순(2021). “펫푸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 이효정·김은주(2018). “개발도상국의 농업 가치사슬을 확대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적용” 국제개발협력,  
13(3):113-130.
- 임영환(2021). “농업회사법인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담회.
- 임정빈 외(2020). “애완동물 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제정 연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승훈·고명덕·박주현(2021).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 한국노동연구원.

- 전학선(2016). “의원입법과 규제개혁”. 「헌법학연구」 22(3), 81-83.
- 지성태(2018). “가치사슬분석법에 기초한 농업분야 공유가치창출(CSV) ODA 사례분석 -베트남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사업”, 농촌지도와 개발, 25(1): 31-44.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1), “스마트농업”. 12.
- 한국경제연구원(2014).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한국교통연구원(2019). “소멸위기 지방도시의 지역 유형별 이동권 확보방안 연구”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2022). “스마트농업 기술현황과 기상정보 융합 사례” . ISSUE PAPER 2022-0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농업·농촌부문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 197-219.
- 한국수의영양학회(2021). “국내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제언” .
- 한상우(2012).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향후 입법적 과제” . 한국입법정책학회·법제처 공동세미나 자료집(「경제! - Regulation?」 - 규제입법의 현황과 향후과제). 60.
- 함인선(2003). “규제개혁의 법과 경제” . 「공법연구」 31(5), 223.
- 홍완식(2008). “규제개혁과 입법정책” . 「공법연구」 36(3), 359.

## [영문 문헌]

- APPA. (2020). “APPA releases findings from new 2019-20 national pet owners survey” . APPA.
- Innopolis. (2021). “글로벌 시장동향보고서: 동물약품 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GFK. (2022). “Man’s best friend: global pet ownership and feeding trends” Growth from Knowledge.
- Statista (2023) “Market size of the pet industry in South Korea from 2017 to 2021 with forecasts up until 2027” .

## [언론보도]

- 국무조정실(2022.6.14.). “규제혁신에 국가역량 총결집, 경제 재도약 선도” . (검색일: 2023. 1.14).
- 국민일보(2022.2.20.). “사료 고를 때마다 진땀...반려동물도 영양가이드 필요해요” . (검색일: 2023. 1.14).
- 농축유통신문(2020.9.4.). “[사설] 추락하는 농업경제지표, 농업의 펀더멘털 고민할 때” . (검색일: 2023. 1.14).
- 데일리팝(2022). “펫푸드 시장 성장세 가속..전략 키워드는 ‘프리미엄’ ” . (검색일: 2023.2.10.).
- 매일일보(2023). “ ‘6조 반려동물 잡아라’ ...이커머스 펫시장 선점 경쟁 “ . (검색일: 2023.2.9).
- 팜인사이트(2021.10.14.). “전체 국가예산 중 농림예산” . (검색일: 2023. 1.14).
- 피그앤포크한돈(2021.12.31.). “2021년 동물약품 산업동향과 시장전망” . (검색일: 2023. 2.1)
- 한국반려동물신문(2022.4.18.). “반려동물 관련 통계, 그 한계와 고민” . (검색일: 2023. 1. 7).
- 한국반려동물신문(2022.6.9). “선진 반려동물 시장 돌아보기 ‘유럽에서 타산지석’ ” . (검색일: 2023. 1.14).

## [홈페이지]

-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www.better.go.kr](http://www.better.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http://www.law.go.kr))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
-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http://www.agriwork.kr))
- (사)한국농수산도매시장법인협회 홈페이지(<https://kawa.or.kr>)